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대한민국 최초보고서 관련 활동

1.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16조, 제17조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의 심의; 경제 사회 문화권 위원회의 결론적 의견; 대한민국, 1995
2. 제12차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참가 보고, 민변 김선수 변호사
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반박보고서 작성
4. 인권A규약에 대한 한국 민간단체 반박보고서 제출과정
5.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민간단체보고서 작성 취지와 경과
6. 유엔 국제사회권규약 민간보고서의 중요내용 및 제출취지 "코펜하겐 정상회의 이후 첫 본격 NGO국제활동"
7.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첫 권고안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과 대처 활동 계획

가. 머리말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위원회의 제언에 대해로 부합하는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그리고 심의서에 대한 적절반응을 제기함에 위원회가 유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보고서가 형식면에서는 포괄적임에도 불구하고 내용면에서는 많은 영역에서 극히 일관적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서에 대해서 더 상세하고 정확한 서면답안을 하겠다고 한 것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1995년 10월 5일, 그 후 다른 답변을 신속하게 제출해줄 것을 기대 감사한다.

나. 경제적 측면

위원회는 과거 30년동안 한국에서의 중요하고 급속한 경제성장과 그로인해 발생한 상당한 물질적 진전이 경제·사회 문화권의 향상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를 놓아야 한다는 것을 반복스럽게 주목한다. 위원회는 한국의 개발 단계에 적절한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한 것 조처들에 더욱 주목한다. 한국사회에서 더욱 긍정적인 발전은 노년층을 제외한 중·저소득 계층 분야에서 나타난 실질적인 문명되지 않은 계층 수준의 증가 그리고 국민 경제생활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에서 입증된다.

위원회는 최근의 입법헌에서 여성에 대한 가정내 폭력문제에 대해 언급한 점 그리고 노년층의 복지를 인정하자 할 점이 주목한다.

위원회는 공공법률구조공제(public legal officers system)의 도입을 통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부 주요부처의 핵심 인권사안에 대한 권고수임을 환영한다.

다. 문화적권을 강화하는 요인과 장애

22-222

	C/	7
	-2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16조, 제17조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의 심의

경제 사회 문화권 위원회의 결론적 의견

대한민국

1. 위원회는 1995년 5월 2일과 3일에 열렸던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회의 (E/C.12/1995/SR3, 4 and 6)에서 규약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최초보고서를 심의하였고 다음의 결론적 의견을 채택하였다.

가. 머리말

2.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위원회의 지침에 대체로 부합되는 포괄적인 보고서를 준비한데 대해, 그리고 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을 회기전에 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출한데 대해서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보고서가 형식면에서는 포괄적임에도 불구하고 내용면에서는 많은 영역에서 극히 일반적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위원회가 제출한 질의서에 대해서 더 상세하고 정확한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한 점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1995년 5월 5일 그에 따른 답변을 신속하게 제출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나. 긍정적 측면

3. 위원회는 과거 30년동안 한국에서의 중요하고 급속한 경제성장과 그로인해 달성된 상당한 물질적 진전이 경제 사회 문화권의 향유를 강화하기 위한 기초를 놓아야 한다는 것을 만족스럽게 주목한다. 위원회는 한국의 개발 단계에 적절한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향한 첫 조치들에 더욱 주목한다. 한국사회에서 더욱 긍정적인 발전은 노년층을 제외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나타난 실질적인 문맹퇴치, 삶의 기대 수준의 증가 그리고 국민 주택조합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에서 입증된다. (평생교육 증가)

4. 위원회는, 최근의 입법안에서 여성에 대한 가정내 폭력문제에 대해 언급한 점, 그리고 여성의 상속권을 인정코자 한 점에 주목한다.

5. 위원회는, 공공법무관제도(public legal officers system)의 도입을 통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부 주요부처의 핵심 인권사안에 대한 정책수립을 환영한다.

다. 규약적용을 저해하는 요인과 장애

6. 위원회는, 한국이 사회적 정치적 이행기를 거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사회적 발전과 정치적 발전은 각각 불균형적이었다. 뚜렷하면서도 급속한 경제발전을 정착시키려는 노력과 그 성과가 항상 적적³한 수준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보호로 이어지지 않았다. 한국은 최근에는 군사통치기간을 벗어나 민주적 정부체제를 갖추고, 특히 뿌리깊은 사회적 편견에 직면하여 시민사회의 수립이라는 중대한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정치적 분단에 야기된 문제들 때문에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에 이유를 둔 광범위하고도 고착된 적대의식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마. 가장 우려되는 분야 (D. Principal subjects of concern)

7. 위원회는 규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 한국정부의 대표들이 모든 국내법이 규약상의 규정과 일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원회는 규약의 규정과 한국 국내법 사이의 적합성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방법(mechanism)이 없다는 점을 계속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8. 위원회는 노동조합 결성권과 관련된 제약들이 규약 8조에 따른 한국정부의 의무와 배치된다고 본다. 특히 방위산업체의 노동자 등의 집단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으면서, 교직 종사자들에게 노동조합 결성권을 금지하는 것은 뚜렷한 이유가 없다. 마찬가지로, 파업권과 관련된 규제는 지나치게 제약적이어서 노동자들 행위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마치 당국만이 절대적인 재량권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이 높이 존경받는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이해하지만, 위원회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부분의 종사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에 속할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이를 옹호하고자 문화적 전통을 내세우는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근거라고 판단한다.

9. 위원회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여러 해고 소식과 조합원들의 평화로운 활동에 대한 경찰의 공격에 대해서 대단히 놀라게 생각한다.

10. 한국정부는 여성문제에 관한 정책과 광범위한 특별 계획들을 발표했지만, 위원회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현재 차지하는 지위가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은 오래된 문화적 편견을 포함해 여러 요인에서 기인하는 차별적인 관행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여성의 종속 상황은 정부 보고서에도 나타난 가정내 폭력의 심각성이 증명한다. (국제결혼의 경우처럼: 역자) 여성이 자녀에게 국적을 양위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여성의 법적 능력박탈을 야기하는 반시대적인 규칙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교육분야에서도,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나타나는 남녀학생 비율의 격차는 우려스럽다. 이에 관련해, 위원회의 견해로는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이 요구하는 높은 비용부담과 용이한 진입여건의 결여가 여성 교육수혜비율의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

11. 위원회는 고용시에 명백하게 발생하는 성차별행위의 높은 빈도 및 작업장에서의 차별적인 관행과 남녀간 임금격차에 대해서 각별한 유감을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한국정

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법률과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12. 위원회는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고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실패해왔다는 사실을 매우 놀랍게 생각한다. 피고용자 10인 이하 사업장에 여러가지 작업안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특별히 우려할 만한 점이다. 이러한 소규모사업장에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유감이며, 위원회는 그러므로 이 상황을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표현을 환영하는 바이다. 한국내 사업장에서 외국인에 대한 처우와 작업조건은 우려를 야기하고 있으며, 한국정부가 위원회에 전달한 정보에는 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범위의 법적 조치가 밝혀져 있지 않다.

13. 위원회는 한국 교육제도의 많은 요소들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 단지 초등교육만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무상교육이 중등 및 고등교육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인다. 또한 위원회는, 한국정부 대표가 극도로 경쟁적인 입시요건 때문에 고등교육 기회의 공급이 부족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구두로 인정한 사실에 주목한다. 이러한 입시상황이 가져오는 하나의 결과는, 사립교육기관들이 쉽게 학비를 올릴 수 있게 하고 저소득층을 교육제도로부터 강제로 배제시킨다는 것이다.

14. 위원회는 한국의 주거상황에 우려를 갖고 있으며 위원회가 이 문제에 관해서, 특히 부적합한 주거상황, 무주택자의 숫자와 강제철거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위원회는, 국제민간단체의 의하면 72만명이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사후대책에 대한 아무런 통보 없이 퇴거당했으며, 1992년 2월 이후로 1만6천명이 역시 퇴거당했으며, 다른 한국내 민간단체의 자료에 따를 때 1994년에 4천가구의 철거가 있었다는 데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이 문제에 관심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문제에 관한 위원회의 질문에 (정부로부터: 역자) 답을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거권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지 못했다.

15. 위원회의 견해로는, 가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재원을 염두에 둘 때 한국정부는 한국사회 주변계층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불충분한 조치만을 해왔을 뿐이다.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의 범주에는 극빈층, 무주택자와 특히 육체적 정신적 장애자가 포함된다.

마. 제안과 권고 (E. Suggestion and Recommendations)

16. 위원회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분야에서 본 규약이 신규(新舊)를 막론한 모든 국내법에 우선하도록 한국정부가 그 법적 지위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국내법과 규약의 규정 사이의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정부가 모든 국내법률을 검토하도록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한국사회에서 규약의 규정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법집행기관들이 그 규정들을 준수함과 아울러 사법절차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약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

17. 위원회는 본 규약 및 기타 적용가능한(비준여부에 따라: 역자) 국제적인 기준과 일관되도록 노조결성의 자유와 파업권과 관련된 법과 규정을 한국정부가 즉각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교사와 공무원 및 기타 집단의 노조결성권과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18. 위원회는 정부가 기존에 수립한 여러 계획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역할 증진에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촉구한다.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서 광범위한 신정책을 추진는데 재원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청소년 및 성인교육, 고용기회 증진, 법개정과 사법행정의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갖는 지위에서 나타나는 여러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추진되어야 한다.

19. 위원회는 작업장에서 안전규정과 최저임금제를 10인 이하의 사업장에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모든 근로조건의 개선은 한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에게 평등하게 미쳐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기존의 차별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20.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주거권을 더 잘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세울 것과 특히 위원회의 '일반 관찰 No. 4'와 일치하는 방향에서 주거대책없는 철거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한국에서의 본 규약 11조적용과 관련된 보충정보와 특히 주거권에 관련된 보충정보를 얻기를 희망한다.

21. 위원회는 교육분야의 문제, 특히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불리한 계층 - 그중에서도 여성 - 의 중등·고등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접근권을 증진시키는 것과 고등교육부문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권고한다. 위원회는 정규교육의 전과정에서 인권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권고한다.

22. 한국정부가 사회복지제도의 기본 요소를 도입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위원회는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 주변계층의 욕구를 충족할 만큼 복지제도를 신속하게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의 사회적 소외와 취약성을 고려할 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바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아울러 극빈자와 무주택자, 정신적·육체적 질병의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끝)

인원 자료실		
등록인	출근인	
	61	36
	-2	

수신 : 민변 집행위원회
 제목 : 제12차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참가 보고

1. 일정

가. 회의전 준비

- 0. 1994. 4. 28. (금요일) 11:05 스위스항공편으로 서울 출발하여 류티히를 거쳐 같은 날 21:00경 제네바에 도착함. 참여연대의 장소임 국제연대부장과 윤진영 교수와 함께 출발. 조용찬 변호사가 영국으로부터 먼저 도착하여 숙소애 동독함. 숙소는 FOYER ST. JUSTIN(15-17 rue de Prieure 1202 Geneva, Switzerland)으로서 유스호스텔임. 주로 외국 학생들이 머무는 곳으로서 1인 1실이고, 전화는 각 층의 복도 끝에 있고, 각 방에 침대 하나와 세면대가 있고, 화장실과 샤워실은 각 층에 두 군데 복도 끝에 있으며, 지하실에 공동취사장이 있음.
- 0. 4월 28일 조용찬 변호사가 먼저 도착하여 사회권규약위원회 ALEXANDRE TIKHONOV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4월 29일에는 네 명이 사회권규약위원회 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완희씨를 만나 회의일정 및 민간단체의 역할과 활동방법 등에 관하여 조언을 구함. 민간단체 대표의 구두발표는 5. 1. 오후에 있을 예정이고, 이 밖에 검토하는 정부보고서는 한국, 필리핀, 포르투갈, 스웨덴, 수리남, 파나마 등인데, 민간단체 대표가 발표를 하는 나라는 한국, 필리핀, 파나마 등일 것이고, 민간단체 대표의 진술시간이 부족하면 오전에 회의진행을 빨리 하고 진술하도록 할 수도 있으므로 오전 회의부터 참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들음. 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 정도 확보하여 줄 것을 부탁함.
- 0. 4. 29.과 같은 달 30.에는 5. 1.에 있을 민간단체 대표의 구두진술 발표문 준비. 구두발표문은 서론(인사말과 4. 18. 노동부장관을 면담하고자 하는 전례두 회원들을 공권력이 무섭하게 짓밟는 사진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지적함), 각 조항별 설명, 결론 및 최종권고(한국의 경제상황과 민주화의 특수성 및 그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 한반도의 분단상황과 평화적 해결원칙의 선언, 인권탄압법으로서의 국가보안법의 중요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수정의 필요성, 국제기구의 권고 준수 의무, 5가지의 최종권고로서, 첫째 정부는 국제기구 등에 의한 권고와 해석을 준수하여야 한다. 즉 인권위원회와 ILO의 권고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과거 경제개발정책의 결과로서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와 규약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인정하여야 한다. 셋째,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해결을 위해 평화적인 해결책이 추구되어야 하고, 사회적 권리의 행사가 물리적인 억압이 동원되어서는 안된다. 넷째 한국에서의 사회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노동법과 국가보안법이 제거되어야 하며, 잠정적인 조치로 국회에서 이러한 법률이 최종적으로 개정될 때까지 그 적용이 유예되어야 한다. 다섯째, 규약에 보장된 사회적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설정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로 구성함. 각 조항별 설명은 미리 준비한 50장의 슬라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기로 함. 발표문 및 슬라이드 사진 등은 별첨.

나. 민간단체 대표의 발표

- 0. 5. 1.에는 언제 민간단체 대표의 진술이 있을 지 몰라 아침부터 회의실에 가서 기다림.

노트북과 프린터를 가지고는 있으나, 프린터에 맞는 아댑터가 없어 프린터를 사용하지 못함. 그리하여 5. 1. 아침에 숙소예약 등이 번 준비에 도움을 많이 준 국제NGO인 IS(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 1, rue de Varenhe, PO Box 18·CH-1211 Geneva 20 CIC, Switzerland ; Director Adrien-Claude Zoller) 사무실에 가서 프린트함. IS 사무실의 팩스와 전화를 사용하는 등 많은 도움을 받았음. 장소영씨의 경우 1994년에 IS에서 두달 과정의 인턴을 받았다고 함. 제3세계 NGO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유엔활동 등에 관하여 교육하는 과정이 있음. 1995년에는 참여연대의 이성훈씨가 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함.

0. 5. 1. 오전에는 유엔 인권담당 부사무총장이 개최를 하고, 신입위원 9명의 선서가 있는 후 의장 1명, 부의장 3명, 특별보고관 1명 등 인선이 이루어짐. 의장으로는 예저오디였던 대로 Phillip Alston(호주) 교수가 선임됨. 위원들 각자의 소개 시간이 있음. 오전 회의는 10:30부터 13:00까지, 오후 회의는 15:00부터 18:00까지 진행됨. 회의장 단상에는 의장과 사무총장 및 사무직원이 앉고, 위원들 18명이 2자 형태로 단을 둘러싸고 앉고, 좌우 및 뒤편으로 관련 국제기구와 NGO 대표 및 기자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배치되어 있음. 단상의 사무국 직원의 좌석에 한국인인 이완희씨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매우 대견했으며, 실질적으로 이완희씨의 도움을 많이 받았음.

0. 5. 1. 오전에라도 민간단체의 진술기회를 좀 지도 모른다는 말에 따라 오전부터 기다렸으나 그냥 오전 회의가 끝남. 유엔 건물내의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를 한 후 오후 회의에 참가. 오후에 한국, 필리핀 및 FIAN, 파나마, 캐나다 NGO 대표의 진술이 있고, 한국의 경우 40분이 할애됨. 원래 1시간 정도를 예정하고 발표문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 생략함. 발표는 3명이 나누어서 읽고 한 명이 슬라이드를 작동하는 방법으로 함. 발표후에 위원들로부터 질문이 있었음. 질문 내용은 남녀평등에 관한 것과 한국의 발전에 관한 것이 있었음. 즉, 남녀차별은 선진적, 자연적인 측면이 있고, 세계 공통의 것이 아닌가, 법률적으로 남녀를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한국에 발전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적절한 발전(adequate development)이 아니라는 것인가 라는 취지의 질문이 있었음. 사회권규약위원회 위원들로부터 남녀평등에 대해 위와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받고 저르기 실망하였음.

우리 발표후에 필리핀 NGO 대표의 발표가 있었는데, 필리핀의 경우 정부보고서가 10 내지 12조에 대해서만 이루어져 NGO의 발표도 강제실거의 문제에 국한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필리핀의 경우에는 비디오를 준비하여 상영하면서 발표를 하였음. 특히 필리핀은 국제NGO인 FIAN(Foodfirst Information and Action Network)과 교섭하여 FIAN으로 하여금 필리핀의 주거권 보장등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함. 그리하여 필리핀의 발표후에 FIAN이 발표를 함. 필리핀 NGO로부터 국제기구나 국제NGO를 후원하는 방법에 관하여 시사점을 얻음.

한편 캐나다의 경우 종전 회기에 정부보고서를 검토하고 위원회가 일만은일까지 모두 하였는데, NGO 대표가 위원회의 일만은평 등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고 발표를 요청하여 발표 기회를 얻음. 캐나다의 NGO 대표들은 캐나다 정부가 사회복지체계를 구조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회에 입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위 법률안들은 빈곤층에 대한 법적 권리와 보호를 철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규약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원회가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진술함. 캐나다 NGO로부터는 비록 위원회에서 정부보고서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의 일만은평을 감시하는 방법으로서 다음 회기에 그 이행상황에 대해 NGO의 입장을 다시 위원회에 제출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얻음.

0. 위원중의 한사람(에스파니아의 JIMENEZ)이 우리의 슬라이드 발표에 인상을 받았는지 슬라이드중 광고성이 산재를 당한 것과 회정환시 관련 사진을 보고 그들의 인격 상황에 대해

여 들었음.

0. 오전에는 정부측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으나, 오후에는 모든 부처의 정부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우리의 발표를 듣고 우리 발표가 끝나자 모두 돌아갔음. 우리 발표가 끝난 후 정부 대표중의 한사람이 대뜸 왜 Republic of Korea가 아니고 South Korea냐고 물었다.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정식명칭이 Republic of Korea이므로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이 문제는 반박보고서를 작성할 때 잠깐 언급이 있었던 사항이다. 당시 국제적으로도 South Korea라고 흔히 사용되고 있고, 또 이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정부보고서의 검토시에도 민간단체들이 반박보고서를 제출하면서 South Korea라고 한 바 있으며, 통일을 지향하는 의미에서 South Korea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고려에서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 바 있다. 그래서 정부대표측에게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취지라는 것을 설명하여 주었다.
0. 우리의 발표후에 주거문제에 대한 국제단체인 Habitat International Coalition이 스스로 수집하고 있던 한국에서의 강제집거에 관한 자료와 김수현씨와 김현호씨가 써서 외국잡지에 게재한 "Eviction Problems in Korea and Their Alternatives"라는 논문을 정리하여 위원들에게 제공하여 주었다.

다. 정부보고서의 검토회의

0. 5. 2.에는 하루 종일 우리 정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있었음. 10:30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위원들이 늦게 도착하여 10:45경 개최. 5. 1. 오전에도 위원들이 늦게 도착하여 11:05경에야 개최. 의장이 다음부터는 시간을 지기자고 당부하였음. 그러나 한국의 대사가 개최 이후에도 도착하지 못하여 한국정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바로 시작하지 못하고 다른 사항을 처리하다가 한국의 허승 대사가 10:53경 도착하여 비로소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시작함. 허승 대사는 유연건동이 복잡하여 회의장을 찾느라고 늦었다고 변명하였으나 매우 공격하게 여겨졌음. 의장은 한국정부의 대규모 대표단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참석한 대표단을 소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허승 대사는 대표단을 소개함. 정부 대표단으로는 허승 제네바대사를 비롯하여 이준희 참사관, 김용달 제네바대사부 노무관, 서법석 교육부, 장재구 노동부, 황인자 정무제2장관실, 마영삼 외무부, 안창호 법무부 검사, 윤강현 제네바대표부, 임인택 복지부, 김양현 노동부, 공지현 외무부, 정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참석했음.
0. 허승 대사가 먼저 25분 정도에 걸쳐 모두발언(Introductory statement)을 함. 먼저 보고서의 준비에 있어서 정부 부처간의 협력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였으며, 이 편 심의를 환영하며, 위원들의 비판과 모멘트를 받아들이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함함. 각 조항별로 법률 규정과 보고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 모두발언중에서 특히 할만한 점은 한반도의 분단과 한반도를 둘러싼 엄청난 현실로 말미암아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강조. (군민정부 수립이후 인권상황에 엄청난 발전(tremendous development)이 있었음을 강조. (군민정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굳은 의지(firm will)를 가지고 있다.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어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정부의 기본적인 철학은 경제발전이 사회발전을 전인한다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 과연 서구의 중심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였다고 장담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음. 한국은 전환기에 있고, 국제적인 심의를 환영한다.
0. 정부보고서에 대한 검토는 1994년 7월 8일 채택된 서면질의서(E/C.12/1994/WP.11)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짐. 결국 위 질의서 자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됨. 작년에 실무그룹회의에 요약보고서를 제출하자는 하였으나, 당시로서는 위 질의서

자체가 어느 정도나 중요한 것인지 인식이 확실하지 못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준비가 미진한 것이 아니었던가 판단됨. 위 집의서에 대한 답변을 한국을 출발하기 전부터 정부측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정부측은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넘겨주기를 저지하여 결국 제네바에 도착한 이후 4월 28일 저녁때 전달받음. 그리하여 위원회의 서면질문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민간단체의 입장을 다시 정리하여 위원들에게 제출하기로 하고 5월 1일 밤에 보충정보라는 제목으로 작성. 특히 국가보안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보안법이 노동권에 대한 탄압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5월 2일 정부보고서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기 전에 보충정보서면(Supplementary Information for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n the situation of South Korea)을 위원들에게 제출함.

0. 의장은 우선 집의서 1항과 2항에 대해 정부대표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해 위원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한 후에 정부대표에 대해 구두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러한 진행방식은 이전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한나절은 정부 대표가 답변을 하고, 또 한나절은 위원들이 질문만 하고, 그리고 한나절은 정부 대표가 구두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이에 대해 각 위원들이 간단하게 평가를 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그러한 진행방식이 위원회의 위원들과 정부대표와의 사이에 효과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진행방식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정부측은 이러한 진행방식에 대해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 매우 당황한 모습이였다.

0. 우선 허승 대사가 집의서 1항(국제규약의 국내법상의 지위와 규약에 보장된 권리가 침해된 경우의 구제수단)과 2항(헌법상 보장된 경제적, 사회적 권리의 법적, 정치적, 실질적 중요성)에 대해 미리 준비한 서면답변에 따라 답변을 함. 이에 대해 위원들의 구두질문이 제기됨.

Texier, Alvarez Uita, Rattray 등이 국제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는데, 요지는 국내법이 조약에 충돌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파업권과 관련하여 국내법이 규약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제규약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법원이 국내법을 무효라고 판단한 예가 있는가, 규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등이다.

이에 대하여 허승대사는 법률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규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규약에 위반되는 국내법은 무효이므로 규약에 위반되는 국내법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법원의 예가 많지 아니하고, 모든 실정법이 규약에 합당하기 때문에 법원이 규약을 이유로 국내법의 무효를 선언한 예는 아직까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관계법이나 국가보안법이 왜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과연 정부가 규약에 위반한 국내법이 전혀 없다고 장담하는 것인지 저의가 의심스러웠다.

일문일답식의 진행방식에 당황한 허승대사는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다음에 답변해도 좋으냐고 의장에게 묻고 이에 대해 의장은 다음에 답변해도 좋으나, 기술적인 것이나 동계적인 것만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것은 즉시 답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함.

그리고 Jimenez, Vusokajova 등이 남녀차별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관련된 질문이 있을 때 답변하기로 함.

0. 다음에 집의서 3항(규약의 공포 내지 교육)에 대해 허승 대사가 준비된 답변서를 읽고 위원들의 질문이 제기됨. Rattray, Texier, Dandan 등이 중요한 질문을 하였다.

Rattray는 "인권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public perception)은 어떤가. NGO 활동을 포함한 인권운동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등에 관하여 물었고, 이에 관하여 허승 대사는 "과거 문민정부 수립이전에는 인권개념이 부정되기도 하였으나, 문민정부 수립이후 인권개념

은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정착되었다. 따라서 인권운동은 보편적이다. 어떤 조직이나 회사에서 인권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특수한 경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Texler는 "정부보고서의 작성과정에 NGO를 참여시켰는가. 국제조약에 있어서도 전국적 토론(national debate)이 중요한데, 국제조약을 대중에게 알리는데 민간단체가 참여하였는가."라는 취지로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해 허승 대사는 "보고서의 작성과정에 NGO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 NGO가 아니라도 학자, 지식인, 학교, 관계자 등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의 TV토론 프로그램등 공공토론이 일반화되어 있어 서로 다른 견해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표현되고 있다. 특히 국민정부 수립 이후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Dandan은 "사회권에 관한 국제조약을 한국 국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가.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10명에게 물어보았을 때 과연 몇명이나 국제규약에 관하여 안다고 답변할 수 있는가."라는 취지로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허승 대사는 "인권에 대해 사람들이 점점 많이 알아가고 있다(more and more aware of human rights). 인권문제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토론이 되었다. 그리하여 차별받거나 불법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하면 10명 모두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지에 관해서는 알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10명에게 이 규약을 어느 정도 알고 물어보았을 때 몇명이나 안다고 답변할 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솔직히 말해서 많지 않을 것이다. 한국 사회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변화중에 있다." 취지로 답변함.

Grissa, Adekuoye 등이 남녀차별에 관하여 질문을 함. 특히 민간단체의 반박보고서중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이 남자노동자의 55.7%(1993년의 경우)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위원들에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 모양이었다. 많은 위원들이 위 통계를 인용하여 남녀차별문제를 지적하였다. 이 문제에 관하여 정부는 서면질의서 7항과 관련하여(7번 길의중에 1993년 인원개발보고서에 보고된대로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이 남성노동자의 47%에 불과한가 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음)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이 1988년에 남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의 52.0%이었는데, 1993년에는 58.5%로 증가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허승 대사는 "남녀의 동등대우문제에 비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다른 기준 내지 근거가 있고 상황이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다.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이 남성노동자의 55.7%에 불과하다는 통계는 노동의 질, 직업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무시한 것으로서 얼마나 정확한 모습을 제공하는지는 의심스럽다. 동일한 직업과 동일한 업무에 있어서 남녀간의 임금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적어도 대기업에서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으며, 공공부문에서 여성에게 보다 많은 취업기회를 주고 보다 많은 임금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녀차별에 대한 구체적차도 법적 구체적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함.

- 0. 모후가 되어 서면질의서 4항(안차별)에 관한 허승 대사의 답변이 있었음. 허승 대사는 준비된 서면답변을 읽고 나서 모후의 질문사항과 관련하여 보충답변을 하겠다고 함. 남녀의 구성비 1992년 현재 남자 약 2,200만, 여자 약 2,180만 정도라고 하면서 자연적 균형이라고 설명. 그리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관련하여 15가지의 법률 및 정책을 거론함. 4항과 관련하여서는 남녀차별문제, 외국인노동자문제,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이 차별 아닌가 하는 문제들이 위원들에 의하여 제기됨.
- 0. 남녀차별문제와 관련하여 Grissa가 "여성실업률이 높고 여성의 노조참가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연령에 따른 통계에 의하면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높은 것 같다. 이러한 여성차별에 대한 법적인 구체적차가 마련되어 있는가"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고, Jimenez는 "가정에서의 모(母)의 지위, 여성차별철폐조약(SIDO) 비준 이후의 실제적인 진보가 있었는가. 간통죄의 문제, 여성차별금지법을 위한 입법, 성차별에 대한 관여, 상속과 교육의 문제, 여자가 독자적인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가"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Taya는 "차별금지조항이 사전 경제영역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은

행 여사원의 채용과정에서 차별이 있는바, 이에 대한 사법적 구제절차는 무엇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이 있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허승 대사는 "과거에는 여직원이 결혼하면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분위기로 말미암아 여성들이 퇴직하는 경우도 있었을 지 모르지만 더 이상 그러한 문제는 없다. 엄격한 법률규정과 지침으로 그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최소한 같은 직종,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 동일 임금이 적용되고 차별은 없다. 한국의 가족관계는 매우 특수한 전통적인 가치가 있다(very special traditional value which Korea enjoys). 가족관계를 엄격한 권리의무관계로 보지 않고 화목과 조화를 추구한다. 가족에서 어머니의 권리, 자식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한국사회와 가정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부부가 재산을 별도로 소유할 수 있으나, 한국 여성의 대다수는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간통죄는 남녀 모두 처벌하고 있으며, 여성을 보다 보호하는 것이 현실이다. 가족관계에서의 현실적인 차별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이에 대해 국가가 일일이 개입할 수도 없다. 교육에도 남녀간에 차별이 없다. 고용과 관련하여 남녀를 차별하는 법률규정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사기업에서 차별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면 정부가 모든 경제생활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자유시장에 개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그러자 Grissa가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기업이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것인가. 민주사회에서 누구든 법을 무시할 수 있는가"라고 질타하였다. Adekunle는 여성의 독자적인 계좌개설문제와 공동계좌(Joint account)개설 가능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허승대사는 Grissa의 지적은 전적으로 옳다고 인정한 후 다시 상속에 대해서도 차별이 철폐되었고, 법률상 남녀를 차별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여성이라도 별도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단독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실제 많은 여성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여기서부터 허승 대사의 답변은 중언부언, 지루진하게 이루어졌다.

그러자 의장인 Alston교수는 국가의 의무는 법적으로 차별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의 차별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Dandan은 "남녀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종류의 조치를 취하였는가. 여성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허승 대사는 상속에서 여성이 차별되지 않고 있으며, 가정문제를 권리개념보다는 다른 무엇이 더 있다는 등 다시 중언부언하였다. 그러자 Dandan은 "내가 듣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다"고 재차 물었고, Jimenez는 "여성차별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는 무엇인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만 한다(must do something positive). 가정폭력(marital violence)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Alvarez Uita는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요소(religious factors)가 차별을 조장한 것은 아닌가"라는 취지로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허승 대사가 중언부언하면서 한국에서 종교에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자 Alvarez Uita는 "내가 들은 것은 종교에 대한 차별문제가 아니라 종교가 성차별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다"고 하였고, Dandan은 "정부의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겠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준비가 안되었으면 다음에 답변하라"고 하였고, 의장은 여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특수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있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허승 대사는 "나로서는 이미 법률상 남녀를 차별을 조항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또 동일 직종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남녀에게 동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실명을 했다고 보는데, 위원회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매우 입장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자 Grissa가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는가" 재차 강조하였고, 의장은 부족하면 내일 답변하라고 함으로써 남녀차별문제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마무리되었다.

0. 남녀차별관제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질문도 중부되고 정부의 답변도 중언부언하면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자 회의장에서 급하게 보호자료(Key Issues on women's status)를 만들어 위원들에게 배포함. 위 자료에서는 가족법에 남성우위조항이 있고, 상속에 있어서 남녀차별은 폐지되었으나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차별적 요소가 있고, 간동회에 있어서는 남녀간의 차별이 없고, 매환의 경우에 남성은 처벌되지 않고 여성만 처벌되며, 채용시의 용모제한이 차별로 취급되지 않았으며, 국회를 포함하여 정부기관이 남녀차별적인 접근규정을 두고 있고, 신부연속법과 관련하여 여성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없으며,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나 시설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0. 외국인노동자관제와 관련하여 Ahmed는 "외국인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special law)이 있는가", Rattray는 "헌법에 모든 시민(all citizens)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외국인에 대한 다른 규정이 있는가. 한국의 경제성장을 고려할 때 외국인 처우에 문제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구체적 차이가 있는가", Texier는 "특별 외국인노동자가 아직도 증가하고 있는가. 특별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산재보상권을 행사하면 강제출국당하기 때문에 산재보상권을 행사하기가 어렵다. 강제출국 시 자기보호를 할 기회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입절차가 있는가" 등의 취지로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회승 대사는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87,000여명으로 취업비자를 가진 사람이 5,450명, 불법체류자(undocumented workers)가 52,000명, 산업연수생이 29,500명 정도이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권리가 보장되고 있으며,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을 하고 있고, 산업연수생도 국내연수생과 동등하게 보호되고 있다. 출입국에 대해서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 외국인에 대한 보호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별법은 필요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리고 Ahmed는 "공무원과 교사등의 노조결성권이 제한되고 있는데, 이 역시 차별이다. 이러한 차별을 개선할 대책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였으나, 답변은 다음으로 미루어졌다.

0. 여성차별에 대한 입법 논쟁이 있는 후에 질의서 5항(퇴직연령), 8항(최저임금법의 적용 제외), 7항(남녀의 임금차별), 8항(근로감독관 순제)에 대한 정부의 답변과 그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이 계속됐다. Grissa "최저임금법이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용자들이 10인 미만으로 고용함으로써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고 하는 일 탈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Jimenez "퇴직연령은 결국 강제퇴직이 이루어진다는 말인데, 퇴직후의 연금제도가 있는가. 공고생으로서 실습교육 도중 산재를 당하여 손가락을 절단당한 이혼의 케이스가 있는데, 산재보상 등을 받았는가", Texier "산업안전조건을 위하여 노동조합 이외에 노동자의 대표제도가 있는가.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무엇이 있는가. 전국적 캠페인이 있는가. 부군부군별로 구체적인 산재예방조치가 있는가." 이에 대해 대사가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하지 못하여 준비해서 다음에 답변하기로 함.

0. 다음에 제8조와 관련하여 질의서 8항(ILO조약의 비준현황), 10항(고원노조의 부인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노동법의 개정계획, 11항(해고노동자 현황), 12항(복수노조금지조항 폐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1992년에 보고하였는데 이에 대한 진척 상황), 13항(국가보안법의 역할)에 대한 정부의 답변과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고원노조금지조항과 파업권의 제한에 대한 위원들의 날카로운 추궁은 국제적인 인권보장 수준의 답변을 잇보게 하는데 충분하였다.**

Texier "ILO조약 제87호, 제98호, 제151호는 비준하여야 할 것이다.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정말 놀랐고(great surprised), 교원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교사직을 잃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정부보고서에 의하면 교사가 출공하고 존경을 받아 노조를 결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파업에 대한 제한이 너무 많다. 이태서야 파업권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노동부장관을 면담하러 간 해고자들이 경찰에 의해 동공과 같이 맞아서 다쳤고, 그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까지 경찰이 난입하여 그들을 언행하였다. 공공질서(public order)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닌가. 공공질서를 이유로 파업권을 제한한다면 파업권은 형해화(skeletonization)하고 말 것이다. 모든 파업은 비파업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Grissa "파업권에 대한 정부보고서에 따른 제한으로 말미암아 이미 파업권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파업도 이미 합법적으로 할 수 없다. 노동운동의 경향이 래디칼하다는 설명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부보고서의 통계에 의하면 1980년 이후의 불법파업의 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Rattray "파업권에 대한 제한은 자유시장원칙과도 양립하지 않는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상 한쪽을 일방적으로 악화시키는 것이다. 분쟁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은 강력한 반노조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는 증거이다. 노동조합권이 제한되는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보상조치가 주어지는가. 이러한 제한 속에서 노동자들의 파업권행사의 결과가 무엇인가.", Ahmed "교원노조를 제한하는 헌법상의 근거인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안보, 공공질서, 사회복지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교원노조가 어떻게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보고서는 같은 페이지에서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권을 인정한다고 하였는데, 국가안보를 위하여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노동조합권을 인정하면서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는가. 노동조합법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가.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전교조 관련자를 복직시키지 위하여 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가 맞지 않는다.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민주적 발전과도 양립되지 않는다. 정말 바뀌어야 한다.", Ceausu "공무원과 교원노조에 대한 제한조치 및 파업권에 대한 제한조치를 정당화하는 것은 정말로 놀랍다(surprising). 교사들의 노동조합권에 대한 제한이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법을 개정하거나 개정하지 않으려 할 때 국민여론을 듣는 법적 절차가 있는가. 교원노조가 교육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정상적인 것이다. 국민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여론을 핑계대는 것은 구 공산주의국가인 나의 조국(former communist country, side ; 루마니아)과 같다."

0. 위와 같이 파업권과 교원노조문제에 관하여 위원들의 열린 질문이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시간이 다 되었다. 의장은 내일 오후에 계속 진행하고, 시간이 부족하면 모레 오전에 더 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고 회의를 끝냈다. 위원들의 진지한 질문과 파업권 및 교원노조에 대한 확실한 인식에 우리는 매우 고무되었다. 다만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이 남았다. 우리는 의장이 내일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날에 계속해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5월 3일 오후의 심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많다고 보고 민간단체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정리하여 위원들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 국가보안법에 대해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도록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들을 만나 강조하기로 하였다. 특히 한국의 정부보고서에 대한 일반견해(general comments)를 작성하는 담당자가 Rattray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만나 특별히 대화를 나누기로 하였다. 그리고 우호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위원으로 Dandan, Ceausu, Jinenez 등을 정하고, 가능한 한 그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5월 2일 저녁에 최소한의 조치(Minimum Measures to be taken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를 작성하고, 다음날 아침 IS 사무실에 가서 프린

트하여 점심시간에 위원들에게 들었다. 또 커피숍에서 Rattray를 만나 민간단체의 활동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0.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를 방문하여 5월 3일 10:00-11:00경 대사를 면담하고, 김용달 노무관과 대화.

0. 5월 3일 오후에 한국 정부보고서 검토회의가 계속되었다. 15:10경 개최. 우선 제10조와 관련하여 서면질의서 14항(혼인외 자, 국제결혼 또는 외국 부모의 자의 지위 또는 국적, 해외입양 현황), 15항(장애인에 대한 차별), 16항(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17항(가정내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및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대하여 허승 대사가 준비된 서면대로 답변.

그리고는 정부 관계담당자로 하여금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도 좋으나 의장의 승락을 받은 후에 공무원들로 하여금 어제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도록 함. 지루한 답변이 1시간 이상 계속됨. 안상호 검사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는 국제법의 기준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답변. 공지현 주제네바대표부 정색담당관 "여성차별에 대해 법적 구체적 차이가 마련되어 있고, 채용에서의 성차별은 형사처벌된다"는 취지로 답변. 제2정무장관실의 확인자치는 "가족법 관계에서의 여성의 차별문제 및 남녀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에 관하여 답변을 하였고, 노동부의 장계규씨는 "출입제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산재보상을 하도록 하였고, 한국의 노동시장이 중소기업에서 노동력이 부족하여 외국인노동자가 수입되고 있고, 외국인노동자의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합법취업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취업비자가 있으면 가족초상이 가능하다. 최저임금법을 확대적용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퇴직연령에 제한이 있는 것은 없고, 일정한 직업의 경우 법률에 정년이 규정된 경우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 산재를 당한 공고생에 대해서는 800달러의 보상이 이루어졌다. 파업이 1880년 이후에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는 노조의 급증과 민주화 바람으로 말미암아 불법파업이 급증하였다가 최근에는 교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교섭기술이 발전하였고, 노동조건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파업이 감소하였다. 산업화 초기에는 경영자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수도 있었으나, 현재는 산업화의 심수기로서 경영자도 노조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교사는 공무원에 속하고, 뒷날부터 감사부일체라 하여 존경을 받았으며, 국민의 교육권과도 관련되므로 교원의 노동조합권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판정한 바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정부 담당자들은 어제의 질문에 대해 미리 답변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읽었다. 답변을 지루하게 하는 것이 시간을 끄는 기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0. 정부의 위와 같은 답변 및 제10조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질문이 이루어짐. 이날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항에 대하여 위원들이 질문을 먼저 쏘고, 정부가 답변이 준비되는대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남녀차별과 공무원 및 교원노조의 금지에 대한 정부의 합리화하는 답변에 대해 위원들의 비판과 질문이 이어졌다. Jinez "아직까지도 남녀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Rattray "파업을 근로계약의 파기라고 할 수 있느냐. 파업이 해고의 사유로 사업주에 의해 고려되고 있는가", Texier "내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산재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교원노조의 금지와 합헌판결이 조약과 일치하는가. 교사의 노동조합권은 조약에 근거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4월 18일과 18일에 있었던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적대적인 폭력에 대해 답변할 것을 다시 요구한다.", Ahmed "공무원과 교사의 노조가 공공질서나 사회복지를 위하여 금지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공무원과 교사의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도 어긋나는 차별이다. 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교원노조를 금지하는 것은 일구이언이다.", Ceausu "정부의 보고서는 재함을 통해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취업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 특히 장애아를 가진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Uysokazova "장애인의 보호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기구가 있는가", Grissa "한국 여성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 우선적으로 아버지의 국적을 따르고 아버지의 국적이 출생지주의인 경우 무국적자가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매우 놀라운 일이다. 1991년에 들어 입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입양을 신청한 아동의 88.5%가 혼인외의 자라고 정부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어린 아동들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는가. 누가 입양을 신청한 것인가. 그리고 여성폭력에 대하여 전국에 걸쳐 8개의 쉼터와 370명의 가운데쉼터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닌가." Adekuoye "혼인외 자의 국적취득은 어떻게 되는가", Alvarez Uita "국제결혼한 한국의 어머니가 자식에게 국적을 물려줄 수 없는가. 이것은 차별이다.", Jimenez "공무원 채용시 장애인에 대한 쿼터제가 있는가. 장애인의 고용권, 고용서비스는 어떤가. 장애인의 교육과 노동을 위한 시설은 어떤가. 장애인으로서 분신자살한 최정환씨의 사건을 보고 매우 놀랐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가."

- 0. 위원들의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 대사는 아직 답변이 준비되지 못하였다면서, 제11조에 관한 서면질의서 18항(빈곤선 이하의 인구에 대한 정책), 19항(도시의 주택부족에 대한 조치), 20항(최저주거기준 부재의 문제), 21항(강제철거의 문제)에 대해 미리 준비한 서면에 따라 답변을 함.

그리고 위 제11조에 대해 위원들의 질문이 제기됨. Winer "최소의 주거면적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가. 그러나 1990년의 경우 주거면적이 25.5 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가족이 살기에는 좁은 것이 아닌가.", Texier "임차인에 대한 많은 설거가 공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었는가. NGO와 Habitat에 따르면 1988년 올림픽때 많은 설거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이며,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은 어떤가. 1990년 이후 4,000가구에 대한 설거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어떤가. 그리고 최근에 신탁동등에서도 설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Rattray "정부가 새로 주택을 지을 때 몇 퍼센트를 빈곤자에게 공급하는가", Jimenez "주택공급에 있어서 입주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 설거민에 대한 주택공급은 어떻게 하는가"

- 0. 대사가 우선 앞의 질문에 대해 답변. "교원노조의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원칙의 문제이다. 전통적인 가치와 관련된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교원노조를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어려움이 있다. 한국 국민의 다수, 국회의원과 교사 자신들이 노조를 바라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의하여 인정되고 받아들여진다면 교원노조를 인정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개선을 고려중에 있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국가 안보문제가 아니라도 직종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이에 대해 Grissa가 당장 반박을 하고 나섰다.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에서 교원노조는 오랜 전통중의 하나이다. 내가 가난한 나라(튀니지)에서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교원노조를 인정하는데 교원노조보다도 덜 공격적이다(less aggressive). 지식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한 권리가 없어야 한다는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의장; 당신도 교수이어서 그러는가) 나도 대학교원노조원이다", Jimenez "교사들이 스스로 말하고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Rattray "교원노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자연의 법칙 내지 순리이다. 교원노조의 문제는 민주적 원칙의 문제이며, 문화적 차이의 문제가 아니다."

- 0. 대사는 직접 답변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두가지를 직접 답변함.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국적과 관련하여 아버지 나라가 출생지주의를 따르는 경우 아이가 무국적자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 국적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혈통주의 원칙이 강하여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귀화할 수 있다. 주거면적과 관련하여서는 단위에 착오가 있는 것 같다. 25.5 평방미터가 아니고 25.5평

이다. 1평은 약 3.3 평방미터이다.

- 0. 그 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12조와 관련한 서면질의서 22항(헌법상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권 보장의 의미), 23항(소외계층에 대한 건강보호의 향상과 취약점), 24항(주요 산업지역에 대한 환경피해의 경제, 사회적 비용)에 대하여 서면답변서에 따라 답변을 함. 그리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에 제기된 질문들에 대하여 답변을 하도록 함.
 - 정무제2장관실 확인자, "여성단체나 여성NGO에서 민법에 차별적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위한 헬터나 가운셀터의 수준에 있어서는 정부보조기관이 많이 있고, 민간단체들에 의한 것도 많이 있으며, 정부가 민간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 노동부 장재구,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가 노동쟁의조정법은 우수하다. 우리나라의 노동쟁의조정법에는 파업기간중의 대체채용금지 규정이 있고, 파업삼가름 이유로 해고하지 못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파업시 대체고용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파업을 이유로 해고가 가능하다. 파업에 대한 제한에 관하여 많은 지적이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북한의 핵문제 등 전쟁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비용 내지 파업손실을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 Textler는 우리나라가 파업에 대해 너무 많은 제한을 하고 있다는 선입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반드시 제한이 많다고 할 수도 없다. 예를 들면 안전을 위한 제한은 ILO에서도 인정하는 것이고, 냉각기간은 파업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안전과 조정을 위한 단순한 절차이다. 긴급조정은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서 전쟁위험에 직면하여 2번 적용했을 뿐이다. 각국의 체계는 독특한 문화, 시기에 따른 특징을 갖는다. 복수노동금지의 문제도 미국은 배타적 고집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출발점은 민주주의이다. 한국의 노동제도를 개별적으로 파업권에 대한 제한으로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위 공무원은 답변하는 동안 20 내지 30초에 한 번씩 헛기침을 하면서 영어공장을 만드느라고 한삼씩 돌을 돌이면서 답변하느라고 진땀을 흘렸다. 내용도 내용이려니와 발표 자체가 너무 힘들어 들는 사람조차 조마조마하고 건디기 힘든 고풍이었다. 정부 대표가 영어를 저 정도밖에 못하는가 삼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었다. 우리나라의 정부 대표가 이런 기본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무시를 당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도 삼기 힘든 노릇이었다. 삼다 못한 대사가 두 차례에 걸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정리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무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떠들떠들 헛기침을 하면서 계속 궤변을 늘어놓는 데는 어안이 빙빙하였다. 이번 정부보고서 검토회의의 클라이막스가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발표 내용이거나 수준을 극명하게 표출하였다.
 - 답답한 대사가 김용달로 하여금 답변하게 함.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설명하고 산업재해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을 설명.
 - 노동부 김양현,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장애인고용촉진법이 2%를 의무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설명.
 - 복지부 임인택, 장애인시설과 재활시설 및 장애인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하여 특수기관의 컨설팅 등의 활동으로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계원, 입양자수가 줄어든 원인은 우선 가족계획으로 말미암아 출생자수가 감소하였고, 그리고 한국의 경우 아동에 관한 책임은 부모가 지는데 가족환경이 좋아져서 입양이 적어졌다.
 - 대사가 받아서 질문에 대해 모두 답변을 한 것은 아니다. 언어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 달라. 경제퇴거자, 빈곤선, 빈곤층에 대한 주택정책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 0. 여기까지 하니카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로 넘겨서 계속 심리를 할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의장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 위원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고 마무리하겠다고 하여 우리는 몹시 당황하였다.

남아있는 부분은 교육권과 관련하여 서면질의 25항(여성의 준평등), 28항(장애아의 교육), 27항(여성의 대학진학율)이 있고, 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 서면질의서 28항(국가보안법에 의한 문화적 표현의 자유의 침해)이 있었다.

Grissa "서면 답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고등교육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여성차별이라 할 수 있다. 대학에서의 여성의 비율이 지나치게 적다.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모든 영연의 불평등과 저임금을 낳으며, 따라서 동등한 교육기회가 중요하다.", Dandan "교육비용에서 공적 비용과 사적 비용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마닐라의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왜 미국의 대학에까지 가는가." 이에 대해 대사는 여학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8%에 이른다. 나머지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의장은 5월 18일 13:00에 최종 일반의견을 채택하여 공포한다고 말하고 폐회를 선언.

- 0. 우리로서는 어제의 긴장된 분위기와는 달리 무언가 정부의 김빠기 작전에 말려든 것이 아닌가, 또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한마디도 언급이 없는 것을 보고 저으기 실망하였다.

라. 사후 조치

- 0. 어쨌든 정부보고서 검토가 마무리되었으니, 우리로서는 최종 일반논평 및 권고가 제대로 작성되도록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티모노프가 일반논평의 초안(draft Consideration of Report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Korea)을 잡아서 위원들에게 나누어 주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하여 이를 5월 4일에 작성하고, 위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장(Statement to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by the NGO Delegation from South Korea)을 작성하여 5월 5일 오후에 사무국 직권을 통하여 사무국 및 위원들에게 전달함.

- 0. 5월 18일 최종 일반논평이 발표될 것에 대비하여 장소영 참여연대 국제부랑이 헌지에 첨부하면서 일반논평을 입수하는대로 국내로 전달하기로 함.

1. 한국정부보고서 검토 사회권위원회 심의회 참가보고 (영문 김성수)

* 민간단체반박보고서 준비과정 및 경과는 95.4.25 기자회견자료 참조

가. 민간단체 대표의 발표(5. 1.)

0. 회의첫날은 민간단체들의 발언을 듣는 날로 한국, 필리핀 및 FIAN, 파나마, 캐나다 NOC 대표의 진술이 있고, 한국의 경우 40분이 할애됨.

나.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심의회 진행(5. 2.-5. 3.)

(1) 정부대표단

0. 정부 대표단으로는 허승 제네라대사를 비롯하여 이준희 참사관, 김용달 세네바대표부 노동관, 서범석 교육부, 장재구 노동부, 황인자 정부제2장관실, 마영삼 외무부, 안창호 법무부 검사, 윤강연 제네바대표부, 임인택 복지부, 김양현 노동부, 공지현 외무부, 정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참석.

(2) 모두발표

0. 허승 대사의 모두발표(introductory statement)을 함. 모두발언중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한반도의 분단과 한반도를 둘러싼 냉엄한 현실로 말미암아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강조. 큰 민정부 수립이후 인권상황에 엄청난 발전(immense development)이 있었음을 강조. (문민정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굳은 의지(firm will)를 가지고 있다.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어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정부의 기본적인 철학은 경제발전이 사회발전을 견인한다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

(3) 검토회의의 진행방법

0. 정부보고서에 대한 검토는 1994년 7월 8일 채택된 서면질의서(E/C.12/1994/HP.11)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질. 위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한국을 출발하기 전부터 정부측에 제출하여 볼 것을 요청하였으나, 정부측은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넘겨주기를 꺼려하여 결국 제네바에 도착한 이후 4월 29일 저녁에 전달받음.

다. 검토회의 중 위원들의 구두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 (발췌)

- 관련자료 : 정부측 서면 답변서(영문) 총 58 쪽

아래 질의응답 중에는 답변이 준비되지 않아 다음으로 미룬 것들이 있음

(1) 국제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 및 홍보문제

- 질의서 1,2,3항

질문 "국내법이 조약에 충돌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파인권과 관련하여 국내법이 규약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제규약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법원이 국내법을 무효라고 판단한 예가 있는가. 규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답변 "법률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규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규약에 위반되는 국내법은 무효이므로 규약에 위반되는 국내법은 있을 수 없다. 법원의 예가 많지 아니하고, 모든 실정법이 규약에 합당하기 때문에 법원이 규약을 이유로 국내법의 무효를 선언한 예는 아직까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관계법이나 국가보안법이 왜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질문 "인권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public perception)은 어떤가. NGO 활동을 포함한 인권 운동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답변 "과거 문민정부 설립이전에는 인권개념이 부정되기도 하였으나, 문민정부 수립이후 인권개념은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정착되었다. 따라서 인권운동은 보편적이다. 어떤 조직이나 회사에서 인권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특수한 경우에 불과하다."

질문 "정부보고서의 작성과정에 NGO를 참여시켰는가. 국제조약에 있어서도 전국적 토론(national debate)이 중요한 데, 국제조약을 대중에게 알리는데 민간단체가 참여하였는가."

답변 "보고서의 작성과정에 NGO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 NGO가 아니라도 학자, 지식인, 학교, 관계자 등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의 TV토론 프로그램 등 공토론이 일반화되어 있어 서로 다른 견해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표현되고 있다. 특히 문민정부 수립 이후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질문 "사회권에 관한 국제조약을 한국 국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가.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10명에게 물어보았을 때 과연 몇명이나 국제규약에 관하여 안다고 답변할 수 있는가."

답변 "인권에 대해 사람들이 점점 많이 알아가고 있다(more and more aware of human rights). 인권문제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토론이 되었다. 그리하여 차별받거나 불법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하면 10명 모두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지에 관해서는 알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10명에게 이 규약을 아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몇명이나 안다고 답변할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2) 남녀차별의 문제

- 집외서 4항

질문 "1993년 인력개발보고서에 보고된대로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이 남성노동자의 47%에 불과한가"

답변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이 1988년에 남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의 52.0%이었는데, 1993년에는 56.5%로 증가하였다. 남녀의 동등대우문제에 비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다른 기준 내지 근거가 있고 상황이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다. 동일한 직업과 동일한 업무에 있어서 남녀간의 임금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부문에서

여성에게 보다 많은 취업기회를 주고 보다 많은 임금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녀 차별에 대한 법적 구체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질문 “여성실업률이 높고 여성의 노조참가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연병에 따른 통계에 의하면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높은 것 같다. 이러한 여성차별에 대한 법적 구체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답변 “과거에는 여직원이 결혼하면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분위기로 탈퇴하여 여성들이 퇴직하는 경우도 있었을 지 모르지만 더 이상 그러한 문제는 없다. 엄격한 법률규정과 지침으로 그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최소한 같은 직종,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 동일 임금이 적용되고 차별은 없다. 한국의 가족관계는 매우 특수한 전통적인 가치가 있다(very special traditional values which Korea enjoys). 가족관계를 엄격한 권리의무관계로 보지 않고 화목과 조화를 추구한다. 가족에서 어머니의 권리, 자식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한국사회와 가정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본부가 재산을 별도로 소유할 수 있으나, 한국 여성의 대다수는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간통죄는 남녀 모두 처벌하고 있으며, 여성을 보다 보호하는 것이 현실이다. 가족관계에서의 현실적인 차별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이에 대해 국가가 일일이 개입할 수도 없다. 교육에도 남녀간에 차별이 없다. 고용과 관련하여 남녀를 차별하는 법률규정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사기업에서 차별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면 전부가 모든 경제생활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자유시장에 개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질문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기업이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것인가. 민주사회에서 누구든 법을 무시할 수 있는가. 국가의 의무는 법적으로 차별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의 차별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여성차별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는 무엇이든 적극적인 조치를 위하여 야만 한다(must do something positive). 가정폭력(marital violence)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요소(religious factors)가 차별을 조장한 것은 아닌가” “여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특수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있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라”

답변 “나로서는 이미 법률상 남녀를 차별을 조장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또 동일 직종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남녀에게 동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보는데, 위원회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매우 입장이 어렵다”

(3) 외국인노동자 문제 및 근로권 관련

질문 “외국인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special law)이 있는가?”

“특별 외국인노동자가 아직도 증가하고 있는가. 불법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산재보상권을 행사하면 강제출국당하기 때문에 산재보상권을 행사하기가 어렵다. 강제출국시 자기변호를 할 기회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변명절차가 있는가?”

답변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87,000여명으로 취업이자를 가진 사람은 6,450명, 불법체류자(undocumented workers)가 52,000명, 산업연수생이 29,500명 정도이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 의해 권리가 보장되고 있으며,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을 하고 있고, 산업연수생도 국내연수생과 동등하게 보호되고 있

다. 출입국에 대해서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현행 법상으로 외국인에 대한 보호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특별법은 필요없다."

(4) 집외서 5항(퇴직연금), 6항(최저임금법의 적용 제외), 7항(남녀의 임금차별), 8항(근로감독관 문제)

질문 "최저임금법이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용자들이 10인 미만으로 고용함으로써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고 하는 입찰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산업안전보건을 위하여 노동조합 이외에 노동자의 대표제도가 있는가, 산재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무엇이 있는가, 전국적 캠페인이 있는가, 부문부문별로 구체적인 산재예방조치가 있는가."

(5) 파업권제한과 공무원 및 교원노조 금지 문제

- 집외서 9항(ILO조약의 비준 현황), 10항(교원노조의 부인과 ILO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노동법의 개정 계획), 11항(학교노동자 현황), 12항(복수노조금지조항 제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1992년에 보고하였는데, 이에 대한 진척 상황), 13항(국가보안법의 적용)

질문 "ILO조약 제87호 제98호 제151호는 비준하여야 할 것이다.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정말 놀랐고(great surprised), 교원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고사직을 잃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정부보고서에 의하면 교사가 훌륭하고 존경을 받아 노조를 결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파업에 대한 제한이 너무 많다. 이래서야 파업권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노동부장관을 면담하려 간 해고자들이 경찰에 의해 동들과 같이 밧아서 다쳤고, 그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까지 경찰이 난입하여 그들을 연행하였다. 공공질서(public order)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닌가. 공공질서를 이유로 파업권을 제한한다면 파업권은 형해화(skeltionization)하고 말 것이다. 모든 파업은 비파업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파업권에 대한 정부보고서에 따른 제한으로 필리핀이 이미 파업권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파업도 이미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노동운동의 경향이 테디킬하다는 설명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부보고서의 통계에 의하면 1990년 이후의 불법파업의 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파업권에 대한 제한은 자유시장원칙과도 양립하지 않는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힘의 관계상 한쪽을 일방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다. 분쟁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은 강력한 반노조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는 증거이다. 노동조합권이 제한되는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보상조치가 주어지는가. 이러한 제한 속에서 노동자들의 파업권행사의 결과가 무엇인가."

"교원노조를 제한하는 헌법상의 근거인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안보, 공공질서, 사회복지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교원노조가 어떻게 국가안보를 위협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보고서는 같은 페이지에서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권을 인정한다고 하였는데, 국가안보를 위하여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노동조합 권을 인정하면서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는가. 노동조합법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가.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전교조 관련자를 복직시키지 위하여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민주적 발전과도 양립되지 않는다. 정말 바뀌어야 한다.

"공무원과 교원노조에 대한 제한조치 및 파업권에 대한 제한조치를 정당화하는 것은 정말로 놀랍다(surprising). 교사들의 노동조합권에 대한 제한이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법을 개정하거나 개정하지 않으려 할 때 국민여론을 듣는 법적 절차가 있는가. 교원노조가 교육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정상적인 것이다. 국민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여론을 핑계대는 것은 구 공산주의국가인 나의 조국(former communist my countryside : 루마니아)과 같다."

- (6) 집의서 14항(혼인의 자, 국제결혼 또는 외국 부모의 자의 지위 또는 국적, 해외입양 현황), 15항(장애인에 대한 차별), 16항(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17항(가정내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및 가부장적 가족제도)

질문 "파업을 근로계약의 파기라고 할 수 있는가. 파업이 해고의 사유로 사업주에 의해 고려되고 있는가"

"산재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교원노조의 금지와 합헌판결이 조약과 일치하는가. 교사의 노동조합권은 조약에 근거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4월 18일과 19일에 있었던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적대적인 폭력에 대해 답변할 것을 다시 요구한다."

"공무원과 교사의 노조가 공공질서나 사회복지를 위하여 금지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공무원과 교사의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도 어긋나는 차별이다. 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교원노조를 금지하는 것은 인그리아이다"

"정부의 보고서는 재판을 통해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 특히 장애아를 가진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장애인의 보호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기구가 있는가"

"한국 여성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 우선적으로 아버지의 국적을 따르고 아버지의 국적이 출생지주의인 경우 무국적자가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매우 놀라운 일이다. 1991년에 들어 입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입양을 신청한 아동의 86.5%가 혼인외의 자라고 정부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어린 아동들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는가. 누가 입양을 신청한 것인가. 그리고 여성폭력에 대하여 전국에 걸쳐 6개의 쉼터와 370명의 카운셀러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닌가."

"공무원 채용시 장애인에 대한 쿼터제가 있는가. 장애인의 고용권, 고용서비스는 어떤가. 장애인의 교육과 노동을 위한 시설은 어떤가. 장애인으로서 분신자살한 죄짓한

씨의 사건을 보고 매우 놀랐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가."

- (7) 제11조예 관한 서면질의서 18항(빈곤선 이하의 인구에 대한 정책), 19항(도시의 주택부족에 대한 조치), 20항(최저주거기준 부재의 문제), 21항(경제절거의 문제)

질문 "최소의 주거면적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가. 임차인에 대한 많은 철거가 공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었는가. NGO와 Habitat에 따르면 1988년 올림픽때 많은 철거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이며,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은 어떤가. 1990년 이후 4,000가구에 대한 철거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어떤가. 그리고 최근에 신림동 등에서도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가 새로 주택을 지을 때 몇 퍼센트를 빈곤자에게 공급하는가, 주택공급에 있어서 입주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 철거권에 대한 주택공급은 어떻게 하는가"

답변 "교원노조의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원칙의 문제이다. 전통적인 가치와 관련된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교원노조를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어려움이 있다. 한국 국민의 다수, 국회의원과 교사 자신들이 노조를 바라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의하여 인정되고 받아들여진다면 교원노조를 인정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개선을 고려중에 있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국가안보문제가 아니라도 직종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질문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에서 교원노조는 오웬 전공증의 하나이다. 내가 가난한 나라(튀니지)에서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교원노조를 인정하는데 교원노조보다도 덜 공격적이다(less aggressive). 지식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한 권리가 없어야 한다는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도 대학교원노조원이다"

"교사들이 스스로 말하고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원노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자연의 법칙 내지 순리이다. 교원노조의 문제는 민주적 원칙의 문제이며, 문화적 차이의 문제가 아니다."

- (8) 질의서 22항(헌법상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권 보장외 의미), 23항(수의계통에 대한 건강보호외 향상과 취약점), 24항(주요 산업지역에 대한 환경피해의 경계, 사회적 비용)

답변 "여성단체나 여성NGO에서 민립에 차별적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위한 쉼터나 카운셀러의 수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보조기관이 많이 있고, 민간단체들에 의한 것도 많이 있으며, 정부가 민간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나 노동쟁의조정법은 우수하다. 우리나라의 노동쟁의 조정법에는 파업기간중의 대체채용금지 규정이 있고, 파업참가를 이유로 해고하지 못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파업시 대체고용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파업을 이유로 해고가 가능하다. 파업에 대한 제한에 관하여 많은 지적이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북한의 핵문제 등 전쟁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비용 내지 파업손실을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 Texier는 우리나라가 파업에 대해 너무 많은 제한을 하고 있다는 선입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반

드시 제한이 많다고 할 수도 없다. 예를 들면 안전을 위한 제한은 ILO에서도 인정하는 것이고, 냉각기간은 파업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압선과 조정을 위한 단순한 절차이다. 긴급조정은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서 전쟁위험에 직면하여 2번 적용했을 뿐이다. 각국의 체계는 독특한 문화, 시기에 따른 특징을 갖는다. 복수노조금지 문제도 미국은 배타적 교섭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출발점은 민주주의이다. 한국의 노동제도를 개별적으로 파업권에 대한 제한으로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장애인시설과 재활시설 및 장애인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하여 특수기관의 컨설팅 등의 활동으로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계원, 입학자수가 줄어든 원인은 우선 가족계획으로 말미암아 출생자수가 감소하였고, 그리고 한국의 경우 아동에 관한 책임은 부모가 지는데 가족환경이 좋아져서 입양이 적어졌다."

(8) 집회서 25명(여성의 문맹률), 26명(장애아의 교육), 27명(여성의 대학진학률)
집회서 28명(국가보안법에 의한 문화적 표현의 자유의 침해)

질문 "서면 답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고등교육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여성차별이라 할 수 있다. 대학에서의 여성의 비율이 지나치게 적다.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모든 영역의 불평등과 저임금을 낳으며, 따라서 동등한 교육기회가 중요하다."

"교육비용에서 공적 비용과 사적 비용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 민간단체 대표가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 1) 경제 사회 문화권에 관한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 2) 보충정보서면(Supplementary Information for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n the situation of South Korea): 한국의 인권침해에 있어 국가보안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보안법이 노동권에 대한 탄압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
- 3) 여성차별에 대한 보충자료(Key issues on women's status): 위 자료에서는 가족법에 남성 우위조항이 있고, 상속에 있어서 남녀차별은 폐지되었으나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차별적 요소가 있고, 간통죄에 있어서는 남녀간의 차별이 없고, 매춘의 경우에 남성은 처벌되지 않고 여성만 처벌되며, 채용시의 용모제한이 차별로 취급되지 않았으며, 국회를 포함하여 정부기관이 남녀차별적인 정년규정을 두고 있고, 성폭력특별법과 관련하여 여성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없으며,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나 시설이 없다는 점을 지적
- 4) 최소한의 조치(Minimum Measures to be taken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참여연대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타-1	31-10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반박보고서 작성

1. 국제인권장전

세계인권선언 - 1948.12.10. 유엔총회결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규약 ;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A,B규약과 B규약 선택의정서는 1966.12.16. 유엔총회에서 채택, 1976.1.3. A규약 발효, 1976.3.23.B규약과 선택의정서 발효

2. 한국은 1990.4.10. A,B규약과 B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7.10. 효력발생
헌법에 의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가짐

3. 규약의 실시기관

A규약 -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당사국이 보고서 제출. 초기에는 Working Group 을 만들어 보고서 심사했으나 1986 ECOSOC결의로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설치. 따라서 법률상으로는 ECOSOC의 자문기관의 성격.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B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Human Rights Committee와 마찬가지로 ECOSOC의 기능을 대행.

B규약 - 규약에 의하여 Human Rights Committee설치, 보고서 심사, 개인통보처리

4. A규약에 의한 국가보고제도

가. 당사국이 규약의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당사국의 대표를 출석시킨 가운데 보고서 심사, 심사후 일반적인 논평(General Comments)을 통하여 인권 상황 평가. 권고

나. 위원회는 A규약의 해석과 적용, 실시상황에 관한 사실상 최고권위를 가진 국제 기관. 이 기관의 평가와 논평은 큰 권위를 가진다.

다. 반박보고서 제출의 필요 - 정부보고서의 부실, 문제점 은폐, 장점만 부각. 위원회에 인권단체들이 정확한 자료와 문제점 제시필요. 위원회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내용을 국제수준에 맞추어 검증.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 위원회의 평가와 논평은 인권운동을 이끌어 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 국내 헌법이론에 의하면 경제. 사회.문화적 권리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적 조항으로서 국민적 열망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국민에게 직접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을 통하여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 A규약도 이렇게 해석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위원회는 이 문언을 넘어 규약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권리의 보장정도에 대하여는 국가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 그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본다.

마. 1994.11. 심사

1994.6.말 Working Group 회의 - 정부에 질문서 만들어 송부, 회의는 주로 이 질문사항을 중심으로 진행. 따라서 Working Group의 질문서 작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필요

5. 규약의 내용과 관련된 국내법

가. 1조 - 자결권. 자원처분권

나. 2조 (1) 당사국의 규약 실현조치 의무

(2) 차별없는 평등한 행사보장

(3) 외국인의 권리행사에 대한 개도국의 제한

다. 3조 - 남녀평등 : 헌법 11조, 남녀고용평등법

라. 4조 - 기본권 제한의 원칙 : 헌법 37조

마. 5조 - 규약의 부당한 해석 금지,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경시 금지

바. 6조 (1) 근로의 권리 : 헌법 32조 (1), 직업안정법

(2) 근로의 권리 보장 : 직업훈련기본법

사. 7조 -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1) 공정한 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2)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 헌법 32조 (3), 근로기준법,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진폐법, 산업안전보건법

(3) 승진의 기회균등 : 남녀고용평등법

(4) 노동시간의 제한,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아. 8조 (1) 노동기본권의 내용

노조결성, 가입과 권리행사의 한계 : 헌법 33조 (1), 노동조합법 8조,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연합단체결성 : 노동조합법 8조

노조활동의 자유와 제한 : 헌법 33조 (3), 제3자 개입금지

파업권 : 노동쟁의조정법, 제3자 개입금지

(2) 군대, 경찰, 공무원의 권리행사 제한 : 국가공무원법

(3) 1948년 ILO협약 준수

자. 9조 - 사회보장권 : 사회보장에 관한 제반 법률,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 복지 관련법

차. 10조 - 가정의 보호

(1) 가정과 어린이 교육, 혼인

(2) 임신부 보호, 유급휴가제

(3) 어린이와 연소자 보호 :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카. 11조

(1) 의식주 권리와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 재개발관련법

(2) 기아로부터 해방 : 생활보호법

타. 12조

(1) 신체, 정신적 건강 : 보건위생관련법

(2) 당사국의 조치의무

유아사망율, 어린이의 건강 : 아동복지법

환경과 산업위생 : 환경관련법, 산업재해관련법

질병예방, 치료 : 전염병예방법

질병치료제도 : 의료보호법

파. 13조

(1) 교육을 받을 권리 : 교육법

(2) 구체적 내용

의무교육실시 : 헌법 31조 (3), 교육법,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중등, 고등교육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기본교육의 장려 : 교육법, 사설학원법

학교제도발전, 연구장학제도, 교직원처우개선

(3) 부모의 자녀 학교선택의 자유

(4) 사립학교설치의 자유

하. 14조 - 무상의무교육실시계획

거. 15조 - 문화적 권리

(1) 당사국의 보장의무

문화생활 참여권 : 사회복지법, 국가보안법

과학발달 혜택 향유권

특허저작권

(2) 과학 문화 보존발전

(3)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의 자유 : 국가보안법

(4) 국제협력

6. 반박보고서의 체제와 내용

가. 목표

전반적으로, 그리고 각 분야별로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위원회회의에서 문제제기되고 제도개선, 정책변경을 위한 권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를 위하여는 국내상황을 전반적으로 잘 설명하면서도 핵심적인 사항이 명확하게 제기되도록 하여야 하며 각 분야에서 국내인권운동을 대표할 만한 단체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

나. 6월말의 Working Group에 대한 것과 11월의 회의에 대한 것을 분리하여 준비.

Working Group에는 가장 중요한 쟁점들을 간략한 정보와 함께 문제제기, 질문을 만드는 데 참고로 제공, 11월 회의에는 풍부한 내용의 보고서를 미리 만들어 제출

다. 6월 말 - 요약보고서

제1부 - 일반적인 역사, 지정학적 상황, 인권상황을 규정하는 요인, 특히 한국의 발전정책과 사회경제문화적 권리의 관계

제2부 -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남녀평등과 여성의 보호, 어린이의 보호, 건강 및 환경권, 교육의 권리, 문화적 권리, 외국인과 외국인노동자 별로 통계자료를 토대로 한 전반적인 상황, 기본적인 정부정책과 그 문제점, 법제도의 문제점, 개선방향을 간략히 정리

가능하다면 Working Group에 대표파견, 로비활동

라. 진행방향

(1)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과 보고서를 집필하는 부분을 분리

(2) 실무적 처리

집필진에 대한 실무적 지원

참여단체간 의사연락과 조정

보고서의 편집, 발간, 송부

국내홍보

Geneva와 연락 정보수집, 대표파견 등 지원

(3) 집필진

전반적인 감수, 보고서의 분야별 자료 수집과 집필 책임자 선정

(4) 일정 - 6월 22일경 요약보고서 완성

6월 20일 원고 최종마감

6월 15일 원고 2차 마감 검토, 수정

6월 10일 분야별 원고 1차 마감, 체제, 내용 조정

6월 5일 분야별 원고 계획서와 자료목록 제출

(5) 원고는 기본적으로 영문으로 작성, 혹은 담당자 책임아래 영문완성.

(6) 기본적인 자료

A규약 전문

위원회, Human Rights Committee의 General Comments

A규약 해설서, 논문

정부보고서 (한/영)

반박보고서 작성지침 - Philip Alston

ILO 규약집, 여성차별 철폐조약, 어린이 권리에 관한 협약,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자료들

B규약에 대한 민변, NCC반박보고서와 인권이사회 회의록, 논평

정부가 ILO, WHO, FAO, UNESCO에 제출한 보고서와 이들 기관에서 발간된

자료 중 한국관련 부분

각 분야별로 정부가 발간한 각종 통계자료집, 백서

민간 인권단체들이 발간한 각종 보고서, 자료집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쓴 각종 논문

(4escri1)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준	자료번호

보도자료

기자간담회: 1994년 7월 5일 (화) 오전 11시, 기독교 백주년기념관 2층 201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관련된 한국의 9개 인권단체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6월 27일 제네바에서 UN인권센터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A규약 보고서 사전심의실무분과 위원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공식 심의문서로 채택되었다.

반박보고서를 공동 제출한 9개 인권단체는 다음과 같다.

노동과 건강 연구회
 노동정책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여성단체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전노대)
 환경운동연합

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및 B규약 선택의정서와 함께 1966년 12월 16일에 UN총회에서 채택되어 1976년에 발효되었다. 이들은 인류가 도달한 인권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현대세계에서 통령국이 지켜야 할 인권의 기준이 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이 자유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은 이른바 사회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A규약의 골격은 다음과 같다.

전문

- 1 조 [인민의 자결권과 자원처분권]
- 2 조 [가맹국의 협약준수의무 및 모든 종류의 차별 금지]
- 3 조 [남녀평등]
- 4 조 [공공복지에 의한 권리 제한]
- 5 조 [해석 적용상의 주의]
- 6 조 [노동의 권리]
- 7 조 [공정하고도 유리한 노동조건을 향유할 권리]
- 8 조 [노동기본권(노조 결성 및 활동의 자유)]
- 9 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10조 [가정, 어머니, 어린이 보호]
- 11조 [상당한 생활수준 보장 및 식량에의 권리]
- 12조 [건강권(환경권 포함)]
- 13조 [교육을 받을 권리]
- 14조 [초등 무상의무교육]
- 15조 [과학·문화적 권리]

한국정부는 지난 1990년 4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정치적 및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및 B규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이 규약들에 명시되어 있는 여러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규약들의 한국내 실시상황에 대한 최초보고서(Initial Report)를 제출하고 그뒤로 5년마다 정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 각 규약의 해석, 감독을 맡고 있는 UN내 기관들은 이 보고서에 기초해 A,B 규약 가입정부들이 자국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들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시정사항들에 대해 권고를 내린다.

(한국정부는 B규약에 대해서 1992년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에 1차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반박보고서(Counter Report)를 작성, 제출한 바 있다. 인권이사회에서는 1992년 7월 정부보고서를 검토한 후 국가보안법이 한국의 인권향상에 주된 장애라는 점을 지적하고 그 폐지를 권고했다.)

A규약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1993년 10월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정부는 이 사실을 전혀 공개하지 아니하고 올해 5월 중순경에야 인권단체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출된 정부보고서는 1994년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A규약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사전 실무분과(Pre-sessional Working group)에서 검토되어 한국정부에 보낼 질문지가 만들어졌다.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A규약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1994년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회의를 열고 한국정부 대표를 출석시킨 가운데 그 질문지를 기초로 정부보고서 내용을 심사한 후 ~~일반적인~~ ~~평~~(General Comments)를 통하여 한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며 필요에 따라 권고사항을 제시하게 된다. **최종평가 (Concluding Observation)**

이것은 비록 한국정부에 대한 강제적 집행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A규약의 해석과 실

시를 감독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A규약위원회가 내리는 해석을 한국정부는 국내에 적용해야 할 국제, 국내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민간단체보고서 [NGO Report]

5년에 한번 있는 A규약위원회의 심사는 한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인권의 상황을 국제법의 기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찾아보는 뜻깊은 기회이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문제점을 은폐하고 장점만 부각시키게 마련인 부실한 정부보고서를 심사함에 있어 A규약위원회가 한국의 실정에 대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까닭에 한국 인권단체들은 A규약위원회에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특히 정부가 인권의 향상을 위해 올바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국내법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상황에서 국제기관으로 하여금 우리의 인권 상황과 법제도에 관하여 올바른 평가와 권고를 내리도록 하는 것은 우리 인권현실의 개선에 큰 힘이 될 것이다.

A규약위원회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정부보고서를 작성할 때 비정부단체들을 참여시키도록 권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정부 민간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민간단체들이 반박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3. 반박보고서 작성 및 제출 경위

국내 인권단체들이 한국정부가 국민에게 전혀 공개하지 아니한 채 작년 10월에 A규약 정부보고서를 작성, 제출했다는 정보를 외국 인권단체를 통하여 입수한 것은 올해 5월 20일 경이었다.

6월 27일부터 5일간 있게 될 사전 실무분과 회의까지 한달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사태의 급박성을 공감한 권영길(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및 업종회의공동대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대표), 조용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3인이 반박보고서를 공동작성할 것을 여러 단체에 제안했고 이에 찬동한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노동정책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운동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 여성단체연합, 노동과 건강 연구소 등 9개단체는 3차례의 회의를 통해 오리엔테이션, 방침 결정, 정부보고서 검토를 마치고 바로 해당분야 집필에 들어갔다.

천신만고 끝에 6월 26일 새벽 2시에야 완성된 43쪽에 달하는 약식[略式]반박보고서(영문)는 정부보고서에 관한 일반적인 평가, A규약을 실행하는데 어려움과 장애, 노동3권, 산업안전과 건강, 사회보장제도와 장애인, 여성의 권리, 교육권,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침해, 환경권등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련해 한국의 상황을 다루고 있으며 말미에 A규약 위원회에 권장할 만한 한국정부에 대한 모의질문이 60항목 이상이 첨부되어 있다.

이 약식반박보고서는 시한에 쫓겨 직접 6월 26일에 제네바로 출국한 이대훈씨(34세: 인권운동사랑방 소속)에 의해 제네바 유엔인권센터 사무국에 접수되었고 실무분과의 위원들에게 배포되었다.

4. A규약 사전실무분과의 반응과 심의결과

민간단체보고서는 A규약 사전실무분과 관계자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어 공식 심의 문서로 채택되었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 홍콩, 아르헨티나, 한국 등 5개국의 정부보고서가 검토되는데 민간단체가 별도보고서를 준비한 나라는 한국뿐이었다. (이제까지 약 120개 A규약 가맹국을 통틀어서 민간단체가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캐나다와 한국 뿐이다.) 이에 따라 이 대훈씨는 유일한 민간단체 참석자로 회의에 공식 참석할 것이 허락되었고 6월 28일 오전에는 반박보고서에 대한 구두 발표와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튀니지 출신의 그리샤(Abdessatar Grissa)교수와 함께 한국정부보고서 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호주 출신인 A규약사전실무분과 위원장 필립 올스턴(Philip Alston) 교수는 "이 보고서를 실무분과가 받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다. 민간단체가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우리로서는 이상적인 상황일 것이다. 이는 A규약위원회가 각 나라별 상황에 관심을 집중할 수 있게 돕는 일이다. 동시에 이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격려함으로써 A규약위원회가 도움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범위한 한국 민간단체들이 제출한 이 보고서는 매우 가치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제네바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많은 국제인권단체들로부터, 이번 보고서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으며, 특히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종합적인 서술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이번 한국 민간단체의 보고서가 일종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실무분과는 1)정부보고서 2)사무국에서 수집한자료 3) 민간단체의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심의대상 정부에게 보내는 질문목록을 확정했다. 한국의 경우 모두 28항목의 질문 내용이 확정되어 정부와 민간단체에 공개되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 11월 본회의에서 답해야 한다.

5. 앞으로의 일정

(1) 정식 보고서의 제출

이번 보고서 제출단체들은 내용을 보충한 정식보고서를 10월 초까지 A규약위원회 사무국으로 접수시킬 것이며, 이럴 경우 이 보고서는 5개국어로 번역된 후 유엔 공식문서번호를 받아 본회의에 제출됨은 물론 두루 회람될 예정이다.

(2) 본회의 첫날 발표

이번 보고서 제출로 인해 제출단체들은 자동적으로 본회의 첫날(11월 21일 오후 3시) 발표 기회를 얻게 되었다. 약 20-30분에 걸친 발표시간에 한국 인권단체들은 위원회 전체 위원들에게 본 보고서의 핵심내용과 그에 따른 시정각자료를 소개하게 된다.

(3) 보충질문 제안

한국 인권단체들은 본회의에 참석해서 위원들이 추가로 제기할 질문내용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의 질문내용 설정을 돕게 된다.

(4) 위원회 일반 평가 및 권고에 대한 활동

위원회는 모든 심의를 마치고 규약에 관련된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 ("일반 평가")를 내리고, 필요한 경우 '권고'를 하게 된다. 민간단체들은 이 평가와 권고에 대해 정부의 후속작업을 모니터하고 필요한 추가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6. 맺음말

민간단체의 약식보고서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보장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여러 민간단체들간의 연대로써 이루어졌다. 또한 냉전시기가 끝나고 비정치적인 분야의 인권이 보다 주목받는 추세에서, A규약에 대한 보다 높은 관심을 이끌기 위해 참여했다. 우리는 이 연대가 한국의 인권운동을 도약시키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연대는 올해 11월 말부터 열릴 A규약위원회 회의 이전에 제출하게 될 정식[正式]보고서의 작성·제출과정에도 이어질 것이며 앞으로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신장에 결정적으로 이바지 하게 될 것이다.

국제적 인권조약에 가입한 나라 정부는 원래 그러한 국제조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자국의 국민들에게 홍보할 의무를 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런 의무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차단·은폐하기를 서슴치 않는다.

이런 조건에서 비정부 인권단체들의 노력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언론의 역할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이 국제적 안목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에 더욱 큰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 796-8364 (민간운동 사랑방)
522-728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전 심의 작업분과에서 확정된 1차 질문사항 요약 (28항)

참여연대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E1-1	33-1

I. 일반 사항

가. 인권을 보호하는 일반적인 법제도에 관한 질문

1. 사회권규약의 국내법상 지위는? 사회권규약상의 권리가 침해된 개인을 구제하는 구체적인 제도?
2. 헌법상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 대한 형식적 인정에 따르는 법적, 정치적, 실제적 효과는? 그에 따른 법적 적용 사례(판례)는?

나. 사회권규약의 권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질문

3. 한글로 번역되어 배포되었는지 여부와, 공무원, 판사, 사회활동가, 일반인에 대해 지금까지 실시된 교육, 규약의 내용을 설명하는 교육적 홍보적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II. 규약의 일반 조항에 관련된 내용 (1-5조)

4. (2조 2항 : 차별방지) 한국 헌법상 차별방지 조항이 성, 국적, 종교, 사회신분에만 기초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그렇다면 인종, 피부색, 언어, 정치적 의견, 재산, 출신에 따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용의 차별을 방지하는데 국가의 의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III. 규약의 각각의 구체적 조항에 관련된 내용

5. (6조 노동권) 남녀 정년퇴직 연령, 퇴직정년 이후 노동상황, 그 이유.

(7조 노동조건)

6.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노동자 범주 모두 예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도 명시.
7. 남녀고용평등법이 여성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미치는 실제 효과. 유엔 인간발전보고서(1993)에서 처럼, 여성 평균임금이 실제로 남성의 47%인가? 정부의 조치는?
8. 근로감독관의 숫자는? 그 규모와 활동의 타당성.

(8조 결사의 자유)

9. 한국이 비준한 ILO조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최저노동연령, 고용평등에 관한 조약을 비준할 계획은?
10. 교사등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노조결성 및 가입금지와 본 규약 8조와의 불일치 - ILO권고대로 노동법을 개정할 의향이 있는가?
11. 지난 3년간 해고된 노동자는 모두 몇명인가? 전노협에서 밝힌 '1993년 3만 3천여명 해고'라는 숫자를 정부는 인정하는가? 노조결성관계로 해고된 교사들은 어떻게 되었나?

12. 한국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한 '복수노조금지 조항의 개정을 적극 고려'에

관련해 진행된 사항은?

13. 국가보안법상 북조선인민공화국을 '이롭게' 한다는 이유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변화와 관련된 사람들의 결사 및 의사표현의 자유가 어떤 방식으로 제약되고 있는가?

(10조 가정 어머니 아동의 보호)

14. 서출 아동, 혼혈아동의 법적 실제적 상황. 해외입양 현황.

15. 장애인 권익보호 조치.

16. 외국인노동자의 차별대우. 새 입법의 필요성.

17. 가정내 여성폭력. 정부의 보호조치. "전통적 가부장제(정부보고서 176항)"가 여성의 사회권규약상 권리실현에 미치는 부정적 요소는?

(11조 생활권)

18. 최저생활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비율. 사회보호대상의 기준치가 기아선인가 최저의 인간적 생활인가?

19. 도시의 심각한 주택부족현상에 대한 정부의 조치. 주거권실현상의 불평등 상황과 그 이유.

20. "최저 주거기준치" 부재의 문제. 그를 설정할 의향은?

21. 건물주에 의한 강제퇴거가 불법인데 그에 따른 기소사실은?

(12조 정신적 육체적 건강권)

22. 헌법상 보장된 "건강하고 유쾌한 환경을 가질 권리"가 갖는 법적 실제적 효과는 무엇인가?

23. 소외계층 건강관리의 질을 높이는데서 정부가 직면한 문제점은?

24. 정부는 주요 산업지역에서 나타난 환경파괴가 야기한 경제적 손실을 조사한 적이 있는가?

(13, 14조 교육권)

25. 여성문맹율이 남성보다 5.6%로 높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 조치는?

26. 장애아동의 교육현황

27. 의학, 과학, 법학, 경제학, 공학, 언어학, 경영학 등 대학의 중요학과에 진학한 학생중 여성의 각각의 비율은?

28. (15조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이에 대한 제약은? 국가보안법은 어떤 방식으로 문화적 표현의 제약을 위해 적용되었나?

인권 자료서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C 1-2	/

3. 인권A규약에 대한 한국 민간단체 반박보고서 제출과정

(1) 보고서의 작성

한국정부는 1990년 4월 인권B규약과 인권A규약에 가입하여 이 규약들에 명시되어 있는 여러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짐과 아울러 정기보고서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었는데, B규약에 대해서는 1992년 1차 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반박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한국정부는 A규약에 대해서도 1993년말경 1차 보고서 제출하였는데 B규약때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국제관행상으로는 비상식적으로) 정부는 이 사실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권단체들은 정부보고서 일차심의 2달전에야 그 사실을 알수 있었다. 더구나 인권단체들이 이 정보를 입수할 것은 제네바에 소재한 국제인권단체를 통해서였다.

이에 대해 국내 인권단체들은, 그간 정부의 인권문제에 대한 소극적 태도나 이미 제출했던 B규약 보고서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데 이번 A규약 보고서도 상당히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미리하게 되었다. 따라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 단체의 노력을 모아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반박 보고서를 해당 심의기관인,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 (인권A규약위원회)에 제출할 필요를 몇몇 인권단체에서 먼저 느끼게 되었다. 여기에 인권A규약위원회가 다른 어떤 기구보다도 민간단체들에게 반박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하나의 동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초기 판단에 따라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권영길(엄중회의 및 전노대 공동의장), 조용환(원호사,민변) 등 3인은 올해 5월 25일 1차심의를 한달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사회권에 관계되는 20여개 단체에게 제안문을 보내 "A규약위원회는 1994년 11월경 회의를 열고 한국정부의 대표를 출석시킬 가운데 그 내용을 심의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일반적인 권고사항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록 한국정부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집행되지는 않지만 A규약위원회가 A규약의 해석과 실시를 감독하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한국정부는 이를 존중하여야 할 국제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A규약위원회가 한국의 실정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부보고서를 심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러한 정보는 인권단체들이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인권의 향상을 위하여 올바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헌법과 국내법이 인권옹호의 의무를 대국적용함으로써 오히려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등 국내법을 이용한 인권향상노력이 국제를 가진 상황에서 국제기관으로 하여금 우리의 인권상황과 법제도에 관하여 올바른 평가와 권고를 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인권운동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편 A규약위원회의 심사는 5년에 한번 있는 기회로서 A규약과 관련된 우리의 인권상황을 국제법의 기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재검토해보는 것은 우리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찾아내어 인권단체들간의 연대활동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대단히 뜻있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B규약의 해석, 감독기관인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는 1992년 7월 정부보고서를 검토한 후 국가보안법이 한국의 인권향상에 주된 장애라는 점을 지적하고 그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고 취지를 밝히면서 공동으로 반박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 대해 동의를 표하고 참여한 9개 단체는 노동과건강 연구회, 노동정책연구소, 민변, 여성단체연합, 인권운동사랑방(현 참여연대 인권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노동조합대표사회의, 환경운동연합이며 실무조정은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맡았다.

9개단체는 3회의 집필진 모임을 가지면서, 우선 일정상으로는 1994년 6월 27일, A규약위원회가 정부에 보낼 질문지를 만들기 위한 실무그룹회의를 가질 때에 맞춰 간략반박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정식 반박보고서는 위원회의 정기회기인 11월말에 맞춰 10월초까지 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기로 하였다.

반박보고서의 내용으로는 민간단체 보고서의 일정한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보고서의 일반적인 틀을 기준으로 참조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인권A규약위원회가 권장하는 정부보고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 1부 일반 설명
 - 가. - 영토, 민족, 정치체제, 경제사회문화적 특징에 관한 일반 설명
 - 인권보호 법제에 대한 설명
 - 나. - A규약의 홍보정도, 번역배포 여부, 보고서 작성기관, 보고서 정보원천의 다양성, 보고서의 국내 회람 및 토론 정도
 - 다. - A규약의 국내법적 지위 : 자결권 실행의 정도/여부, 규약의 국내법상 지위, 국제법에서 보장되는 규약의 조항 적시, 규약비준이후 저촉 국내법의 개정 여부, 외국인에게 차별 적용되는 조항 여부
 - 라. - 규약의 적용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여부

2부 규약 조항별 설명

조항별 설명에는 각조의 해당권리의 실현정도, 법제, 정부정책 및 의지정도, 해당사회집단의 상황(통제) 및 해당권리보장에 대한 평가 등이 서술된다.

9개 단체 집필진은 이러한 양식에 비춰 볼 때 인권A규약에 대한 반박보고서에는 노동단체, 농민단체, 여성단체, 빈민단체, 어린이보호단체, 장애인단체, 교육관련단체, 사회복지관련단체 등의 의견과 반박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고 따라서 참여하지 못한 농민단체, 어린이보호단체,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원고를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주로 시간제약 때문에 사회복지학계로부터의 간단한 원고 외에는 별도로 첨가할 수가 없었다.

각 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집필진들은 모임을 가지면서 그동안 수집된 정보를 교환하면서 상호 브리핑시간을 가지고 A규약 및 보고서작성의 의의와 작성지침 및 예산분담안을 합의하고 각각 해당 분야별로 분담해서 집필에 들어갔다. 조항별 원고 이외에 정부보고서에 대한 논평이나 민간단체 입장에서 본 규약상 권리실현의 장애, 그리고 규약위원회가 한국정부에게 제기할 만한 예비질문항목들은 조용환 변호사와 인권운동사랑방 실무진에서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특히 정부보고서에 대한 논평에서는 이 보고서의 취지와 성격 및 개요와 초점을 설명함과 동시에 규약에 대한 정부차원의 통보 내지 홍보가 거의 없다는 점, 또 정부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나아가 보고서개공을 요청하는 민간단체의 요구를 회기시작 직전까지 서부했다는 점 언급하였다.(정부는 유엔에서 아직 공식분서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공식문서채택여부와 상관없이 정부는 민간단체들과 협의해야 하며 또 후에 확인된 것이지만 유엔에서는 이미 작년 12월에 한국정부의 보고서를 정식문서로 채택해서 회람한 바 있다.)

또 규약상 권리실현상의 장애에 대해서는 국민참여가 배제된 국가주도형 개발전략의 체계적 문제점, 군부가 개발독재를 추진하면서 나타났던 사회 각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를 예시하였다. 이 글은 결론으로 군부의 개발독재전략이 국민적 저항을 낳으며 사회통합성의 전반적인 저해로 이어진 점과 인권의 가치판보다는 적자생존식의 권리침해로 귀결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다음 각 항목별 보고서에서는 노동자권리의 상황, 산업보건 및 건강의 문제, 장애우 복지, 교육의 권리, 외국인노동자의 권리침해에 대해서 각각 해당 단체의 분석을 통계와 더불어 제시하였는데, 여성의 권리와 환경권문제는 집필기간이 너무 짧고 번역에 어려움이 컸기 때문에 마감시간에 맞춰 보고서에 실을 수 없었다. 또 마지막 순간에 한국정부에 제기할 만한 모의질문 60항목이 첨부되어 보고서의 진을 높였다. 민간단체 보고서는 그 기능이 규약위원회 전문가들에게 별도의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그들이 해당 정부에게 가장 효과적인 질문을 하도록 돕는데 있는데 그런 면에서 마지막에 첨부된 모의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다.

(2) 보고서의 제출과 접수

마감시간의 급박성과 정부로부터의 비협조 덕분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며 43쪽의 영문보고서의 편집까지 마친 시각은 회의시작을 30시간 정도 남겨둔 6월 26일 새벽 2시였다. NGOs' Initial Report라는 영문명칭의 표지를 달아 복사까지 마친 것은 6월 26일 오전 10. 회의전에 제네바에 도착할 마지막 비행기는 그날 오전 12시에 있었다. 원래 이 보고서는 우편으로 국내 인권단체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제네바 소재 국제인권봉사회(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에 보내 그 대표를 통해 인권인권센터에 접수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부 및 민간단체보고서를 1차로 심의하는 인권A규약 실무그룹의 회기가 현지 시각으로 6월 2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는데 간략반박보고서의 완성을 22시간전해야 마쳤으므로 우편발송을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할 수 없이 최종 실무를 맡았던 내가 직접 보고서를 들고 현지로 가서 유엔인권센터에 접수하기로 되었다.

결국 최소한의 준비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숙소예약도 전혀 예약이 안된 상태에서 황급히 제네바공항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각으로 6월 26일 저녁 7시였다. 물론 기내에서는 만약에 있을 지 모르는 구두발표나 로비활동에 대비해 많은 분량의 자료를 소화해야 했다. 공항에 나온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일하는 필립인 켈투리오스씨의 도움으로 숙소를 잡고 여장을 풀은 것은 6월 27일 오전 9시20분, 회의시작 40분전이었다. 그러나 유엔청사 바로 앞에 위치한 국제인권봉사회의 실무자들은 매우 친절하게 보고서접수를 위해 누구를 어디서 만나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었고 그 자문에 따라 9시40분에 문을 두드린 곳은 인권A규약위원회 사무처의 사무처장 티코노프씨(그가 위원회 사무처의 유일한 실무자였다)의 사무실이었다. 예고도 없이 등장한 한국인권단체들의 반박보고서를 제발리 검토한 사무처장은 보고서의 내용이 매우 훌륭하다며 위원회 위원장인 필립 울스턴교수(Philip Alston, 호주국립대 법학 교수)의 방으로 인도하였는데, 울스턴교수와 약 10

분간 대화를 나눈뒤 그의 동의아래 위원회에 우리 보고서를 접수시킬 수 있었다(10시 정각). 올스턴 교수는 사회권분야에서 진보적인 입장을 개진한 가장 저명한 권위자들의 한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보고서에 대해서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또 처음부터 자신이 작성한 한국정부에 대한 질문지초안을 건네주며 비공식적인 사전검토를 부탁하기도 하였다. 단 여기서 꼭 언급해야 할 것은 복잡하고 엄격한 듯 보이는 국제기구에서 나는 신분증 제시나 단체의 위임장 또는 어떤 증명서류를 제시함이 없이 간단한 대화와 보고서제출을 통해서 모든 공식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다시한번 반사적으로 우리나라의 폐쇄성을 절감할 수 있었다.

(3) 회의 참석

곧이어 나는 회의참석 공식참가를 허용하는 신용장(이름표형식)을 달고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회의는 조출하게도 5명의 전문위원과 사무처장 및 실무보조요원과 유엔주재기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 민간단체에서는 내가 유일한 참석자였다. 5인으로 구성된 실무그룹은 6월 27일 시작된 5일간의 회기 중에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의 정부보고서를 검토하고 올해 11월에 정식으로 정부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공식적으로 정부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었다. 그 심의결과에 따라 인권A규약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해 규약의 완전한 실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필요한 권고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권고안은 비록 한국정부에 대해 강제적으로 집행되지는 않지만 한국정부는 인권A규약의 해석과 실시를 감독하는 이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내의 제반 인권상황을 개선해야할 국제법적 의무를 지게된다. 이번 회기에는 한국을 비롯한 홍콩, 아르헨티나 등 5개국 정부의 보고서를 검토하는데 민간단체가 별도로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한국뿐이었다.

실무그룹의 첫 회의에서는 회의운영절차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올스턴 교수의 추천으로 한국인권단체들의 반박보고서는 회의공식심의문서로 채택되어 배포되었으며 나에게도 반박보고서의 요지를 구두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다음날 오후에 주어지게 되었다. 올스턴위원장은 첫날 이번 회기에 유일하게 제출된 한국의 반박보고서를 회기 첫날 위원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반박보고서로 인권A규약위원회가 각 나라에서 인권A규약에 관련된 구체적 인권상황에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협력이 인권A규약의 일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어 '진심으로 기쁘다'고 말할수 있겠으며 덧붙여 "이러한 상황이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상황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국정부의 보고서 검토 및 대정부 질문지 작성은 의장인 올스턴 교수와 튀니지 출신의 압테사탈 그리사(Abdesattar Grissa, 경제학)교수가 담당하기로 정했다. 절차간 결정하고 간단하게 첫날 회의가 끝난 순간 한국 제네바대표부에서 참사관이 도착하였는데 티코노프사무처장이 절차규칙에 따라 실무그룹 회의에는 정부대표의 참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민간단체의 보고서나 질문지초안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자 참사관은 그냥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실무그룹은 정부대표들에게는 일체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민간단체들은 참석이 허락된다.) 따라서 실무그룹회의는 민간단체의 참석만 허용할 뿐 일체의 정부참석없이 전문가들의 회의로 진행되었다.

6월27일 둘째날 오전에는 위원들의 자료검토시간이었으므로 회의가 없었는데, 이 때 나는 한국정부에 대한 질문작성을 올스턴교수와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는 그리사교수와 만나 약 2시간동안 우리 반박보고서의 핵심과 또 시간상 빠진 부분을 구두로 설명하고 그리사교수가 추가로 요청하는 통계에 대해서 곧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두시간의 대화로만 볼 때 그리사교수는 전형적인 경제개발론자의 인상을 강하게 풍겼는데, 연거푸 한국의 경제발전의 놀라움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사교수와 올스턴교수가 작성할 질문지 내용에 좀더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이후 오후회의시간에 들어가서는 예정된 대로 약 15분간 우리 반박보고서의 제출취지와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약간의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대부분 우리 보고서에 빠진 분야(여성, 환경)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이후 민간단체의 정식보고서에 보충하겠다고 답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사교수와 올스턴 교수는 이미 대화를 나눈 상태였고, 다른 위원들은 한국이 심사대상이 아니었으므로 특별한 질문은 없었다. 민간단체의 참석은 나 혼자였으므로, 이날 오후로서 민간단체의 발표는 종료되었고 그 이후의 회의는 질문항목을 놓고 위원들간의 토론을 벌이는 비공개모임과 위원들의 자료조사시간으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나의 회의공식참여는 모두 끝나게 되었다.

다음날 위원회 사무처장 티코노프씨를 방문해서 여러가지 대화를 나누었는데, 티코노프씨는 인권A규약의 중요성을 계속강조하면서 한국 인권단체들이 이번 회기를 살려 12월 정기회기에 참석하는 등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 하고 하면서 인권A규약의 선택의정서를 채택하려는 위원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도록 부탁하였다. 그 한가지 방법으로 한국인권단체들이 공동의 명의로 선택의정서 초안을 제출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또 민간단체 가장 개방적인 유엔기구의 사무처로서 한국 인권단체들이 요청하는 모든 실무지원 및 자료제공을 돕겠다고 약속하였다. 티코노프씨는 기타 위원회 회기참석중 민간단체들이 할 수

있는 여러가지 효과적인 활동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면 11월 하순에 있을 회기의 첫날 민간단체 발표시간에 슬라이드나 비디오자료를 준비해와서 한국의 빈부격차(주거현실, 근로조건등)에 관한 화면 자료를 보여주면서 발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조언이 있었다. 구러시아에서 나름대로 경제와 민생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진데서 출발해 위원회 설립초기인 86년부터 사무처에서 근무해온 티코노프씨와 얘기를 나누면서 나는 다시한번 사무처나 위원회 위원등 중요한 직책에 한국출신 인권학자나 활동가가 한 사람도 없는데 대한 아쉬움을 느꼈다.

6월31일 심의마지막날 오전 바쁜 일정에 단지 15분간의 만남을 약속받은 나는 다시한번 올스턴 교수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예상대로 질문지 초안에 우리 반박보고서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발견하고 가능한 최고의 속도로 대화를 나눴다. 배경에는 올스턴 위원장이 심의대상 5개국에 대한 질문지를 모두 검토해야 하는 관계로 그리사교수가 초안을 거의 전담해서 작성한 것인데 '애석하게도' 반박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날의 짧은 대화는 서로 유익하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수정된 질문지가 다음날 배포되었다. 아래 내용은 7월1일 최종 확정되어 발표된 질문지의 질의사항인데 밑줄 친 부분은 6월 31일지 초안에 없던 내용이 새로 추가된 것이다. (질의내용을 선택하는 것은 실무그룹의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본 회기에 해당 정부대표는 이 질의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할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추가질문에도 대답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완전히 공개되기 때문에 불충분한 답변은 정부로부터 추가의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강제조치를 결정한 국제조약기구에서 독립된 전문가들이 각국정부에게 답변하기를 요구하는 질의내용은 일종의 외교적 압박으로 작용하는데 이것이 거의 유일한 압박장치이다.)

(4) 회기전 실무그룹에서 확정된 1차 질의사항(28항목)

인권A규약의 국내법상 시위(1항), 국내법상 인권A규약상 인권피해자의 구제절차(1), 인권A규약이 한글로 번역되어 국민에게 책자로 배포되었는지 여부(3), 공동원 판사 일반인에게 홍보교육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였는지 여부(3), 인종과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 방지여부(4), 여성임금의 불평등에 관한 질의(7), 근로감독원의 활동과 수(8), ILO조약중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고용평등에 관한 조약을 비준할 것인지 여부(9), 교사 및 공무원 종사자의 노조결성 및 가입의 자유 보장 및 관련법 개정 여부(10), 1993년 3천3백여명의 해고자(해적교사 포함)등 현상화에 관한 질의(11), 한국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한 "부수노동금지 조항의 개정을 적극 고려" 약속의 이행여부(12), 국가보안법상 북조선인민공화국을 '이름개' 한다는 이유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와 관련된 결사 및 의사표현의 자유가 어떤 방식으로 제약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13), 국가보안법이 어떤 방식으로 문화적 표현의 제약을 위해 적용되었는가에 대한 질의(28), 장애자의 권익보호조치(15), 장애아동의 교육현황(26), 외국인노동자의 차별대우 및 입법에 관한 질의(16), 가정내 보호조치 및 "전통적 가부장제(정부보고서 175항)"가 여성의 권리실현에 미치는 부정적 요소에 관한 질의(17), 심각한 주택 부족현상 및 주거권실현상의 불평등 상황에 관한 질의(18), "최저주거기준치" 부재의 문제(20), 한국헌법상 보장된 "건강하고 유쾌한 환경을 가질 권리"의 실효성 여부(22), 소의계층 건강관리의 질의 높이는 문제(23), 주요산업지역에서의 환경파괴가 끼친 경제적 손실 규모(24).

진행
시행

4. 반박보고서 제출과 연관된 전체 활동에 대한 평가 및 향후과제

질문지 확정으로 임무를 마친 실무그룹 회기가 끝나자, 반박보고서 제출에 참여하였던 9개 단체 집필전에서는 결과를 공유하고, 평가와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였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 긍정적인 면 >

- 예외적으로 여러 단체의 공동노력으로 비교적 체계적인 보고서 제출에 성공했다.
- A규약위 실무분과, 사무국 및 국제인권단체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으며 아울러 A규약 본 회의에 정식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규약의 선택의정서 초안 작성에 대한 사무처의 권유가 있었다. 그만큼 한국 인권단체의 활동에 신뢰를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정부보고서에 대한 단순한 반박 차원을 넘어서 인권단체들간에 경제 사회 문화 권리에 대한 인식에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
- 원고작성 및 예산 마련에 책임분담의 원칙이 대체로 지켜졌다.

< 부족한 면 >

- 복지, 아동, 노인, 환경, 여성 등 보충할 내용이 많이 남아 있으며 연관 단체들간의 토의와 검토가 부족했다. 복지나 아동과 같은 경우에 준비기간이 짧아 원고를 작성할 단체나 개인을 찾기가 힘들었다.

- 참여단체내부에서 정부 보고서 즉 정부의 A규약 이행(의지)여부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 분석이 부족했다.

- 예산 및 실무분담을 더욱 공평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각 단체 내부의 공동인식과 더 적극적인 사전 인식이 필요하다. (이번 활동에 민변의 재정적 배려가 중요한 추진력으로 작용하였다.)

< 후속활동 >

(가) 2차보고서 작성 계획 및 추진 : 10월 초까지 풍부한 분량의 민간단체의 정식보고서를 제출해서, 그 요약본을 5개국어로 번역돼 유엔공식문서로 회람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작성 지침서가 집필진을 물 준비해서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선택의정서 초안 작성 및 제출도 노력해 보기로 하였다.

(다)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열리는 규약위원회 본회의 참석을 준비하고 발표문과 보조자료, 회의모니터활동, 여론화 활동 및 기타 후속조치를 준비하기로 하였다. 단 여기에는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하므로 회의에 참석할 대표선정이나 예산문제 및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8월2일 9개민간단체으로부터 유엔인권센터로부터 전문이 도착하였는데, 그 내용은 "한국정부가 94년 12월 제대바에서 열리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의 11차 회기에서 다음 예정이던 1차 보고서 검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여, 95년 5월 1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12차 회기에서 다루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9개단체들이 공동으로 준비할 모든 내용은 95년초로 연기되게 되었다.

5. 냉전이후 시대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옹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인권운동과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 나아가 철학적 일관성을 갖추면서도 민중의 요구를 수렴하고 정치적으로도 실현 가능한 제도화의 방법도 아울러 모색해야 한다. 그 첫걸음으로 냉전이후 변화된 세계경제 속에서 경제적 사회적 권리가 차지하는 자리를 재검토하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자유시장경제가 구산권을 이겼다는 단순한 그리고 틀린 논리를 받아들이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자유시장경제가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제대로 보강하지 못한다는 견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공익 또는 부지와 자유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 시장논리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라야 한다는 점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명제일 것이다. 대표적으로 독일 보수정치를 대변하는 쾰른주교가 1991년 독일고속노조 100주년 기념사에서 "자유적인 노동조합은 사회적 시장경제를 형성해 나가는 전제조건이며, 동시에 독일 민주주의의 안정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기반이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오늘날 합리적인 우익정치권에서조차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권리의 증대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 또 이는 일국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념의 자리에 경제가 대신한 시대에 지역차원과 국제적 차원 모두에서 이른바 경제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이 주도하는 이러한 경제전쟁 개편과정에는 다분히 '적자생존'의 경쟁논리가 작용하고 있다. 일찌기 인권의 제도화분야에서 선구적인 노력을 해온 유럽공동체(현 유럽연합)의 경우 이제 지역적 통합을 위해 시장경제논리에 대한 견제를 목표로 경제적 사회적 권리의 보호제도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은 거의 이러한 예방조치가 전무하다. 최근 진행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도 인권에 대한 일체의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1) 한국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기본 방향

○ 먼저 정부와 시민사회 여러층에서 경제적 사회적 권리의 중요성과 그 증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공언(公言)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국민의 사회적 권리에 관한 헌장" 또는 "사회적권리헌장" 등 법적 구속력있는 문서의 채택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 각층에서 사회의 유기적 통합성과 윤리성 회복을 위해 경제적 사회적 권리가 갖는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발전권'과 '사회통합' 그리고 '경제권 및 사회권'의 새 범주는 새 국제질서를 모색하는 일환으로서 서로 중첩되면서도 밀접히 연관된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는 국제인권법상 매우 중요한 주제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사회개발을 위한 세계정상회의"(유엔 주최, 95년 3월 코펜하겐)의 주제이기도 한다. 사회통합을 통일과정에, 발전권을 과거 개발독재형 경제개발의 문제점에, 사회권을 빈부격차와 사회분열에 연관시킨다면 이 주제의 중요성은 우리 사회에서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특히 사법부)와 시민사회는 다가오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사회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눈을 돌려야 한다.

○ 다음 한국정부도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내용과 그 해석상의 설명을 범국민적으로 홍보하고 인권분야 공무원에게 교육시켜야 하며, 또 국민기초교육에도 포함시켜야 한다. 또 정부와 인권단

체 차원에서 공히 인권A규약의 선택의정서가 제정되고 채택되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 대한 전문역량이 각계에서 배출되어야 한다. 몇가지만 예를 들면 이분야의 전문법조인, 복지문제를 권리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 사회적 전문 인권단체, 경제적 사회적 권리의 지표에 대한 연구자, 국제화과정 특히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 실현에 대한 연구자, 노동조합등 재층별 권익단체간의 사회권차원의 공동대응 및 연대(나는 이를 '권리의 연대'라고 부른다)활동을 추진하는 사람들, 이와 관련되어 집단적 권리로서의 발전권(right to development) 전문가, 사회권관련 국제인권기구(ILO, 인권A규약위원회 등)에 한층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을 벌일 인권운동가 등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 지표에 관한 연구와 인권A규약의 선택의정서 초안작성 및 채택압력' 두분야는 우리가 국제인권운동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장이라고 생각한다.

◦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전담 사법절차가 필요하다. 노사간의 제소를 전담하는 독일의 노동법원도 참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 무엇보다도 당장은 정부가 내년 5월에 인권A규약위원회에 참석해서 이미 준비된 28항의 질문과 전문가들의 예리한 보충질문에 불충분하게 답하기 보다, 사전에 광범위한 사회적단체들과 대화를 나누고 현실을 파악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충실하게 국제조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2) 발전-민주주의-인권이라는 하나의 주제

끝으로, 인권운동이 대처해야 하는 발전(혹은 개발)-민주주의-인권의 정담(鼎談)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글을 마친다. '인권의 종합성'은 '인권법주의 사회권으로, 적극적인 확대'를 필요로 한다. 이때 사회권문제는 경제발전체계의 문제와 직결되며, 특히 치하에서 기증된 경제발전체계의 근본적인 수정은 중요의사결정에 국민참여를 전제로 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 즉 보다 높은 수준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실현을 전제로 한다.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발전된 민주화운동과, 주요의사결정에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의 확대, 그리고 사회권으로 확대된 인권운동(또는 사회권으로 연대하는 대중운동)은 모두 같은 주제를 달리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 및 참여운동등이 결합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다. 어떻게 인권운동은 권리의 연대를 통한 대중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다.

나아가, 인권운동의 사회권에 대한 관심은 현대자본주의사회의 발전모델에 대한 인권운동의 증체적인 비판과 대안대안까지 전진하도록 한다. 최근의 성수대교참사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사회에서 21세기의 지속적인 문제로 대두된 '도시시설 노후화'의 문제 및 도시문명에 대한 대안사회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 >로 들 수 있다. 노동인구 고밀도의 도시형상을 통한 국가주도 경제발전이 가져온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의 심각하고도 장기적인 침해에 대해 인식이 형성될 때, 인권운동은 자연스럽게도 곧 한국의 경제발전모델 자체에 대한 회의를 주요 관심사로 채택하게 되며 그 당연스런 대안으로서 '사회권이 근본적으로 보장된 경제발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체제가 다른 사회의 인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길이 열릴과 동시에, 냉전이후 '이념성'을 대신해서 '경제개발'의 언어가 지배하는 모든 현상과 정황분야에 인권운동은 '사회권'을 무기로 개입함으로써 인본주의적 가치관과 제도의 확산이 기여할 수 있으며 또 그래야 할 것이다. 또한 체제가 다른 사회를 객관적 기준으로 보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국제화'에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 우리는 진정화 국제화가 인권과 민주주의 등 인류의 보편적이고 진보적인 고귀한 가치를 모든 민족과 국가가 공유하고 실현하며, 민중의 이해와 요구에 기초한 공동번영을 추구하는데 있다고 믿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이러한 고귀한 목표를 아태지역에서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여야 한다. 한국의 민간사회단체는 뜻을 같이 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민간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국경 민족 및 인종을 넘어서는 '민중중심의 발전(People-Centered Development)'과 초국경적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 경제협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94 APEC 보고서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 민간사회단체의 입장, 94.11.15)

** 나의 책임으로 주를 달지 못한점을 사과드리며, 이후 이 글을 다시 정리할 때 보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보통 영어명칭인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는 비정부조직으로 지역되기도 하지만, 그 성격을 살려 나는 민간단체로 부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본다.

위원회가 설치되기 이전부터 지켜져온 절차인데 경제사회이사회가 다루는 의제의 방대함 때문에 이 절차는 매우 비효율적이었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인권A규약위원회가 규약관련상의 모든 내용을 경제사회이사회를 대신해서 추진하면서 상황을 완전히 달라졌다. 유엔 여러기관과 가입국 정부, 그리고 관련된 민간단체 사이의 정보 교환수준 및 그 종합성은 질적으로 향상되었고 권고내용도 상당히 실질적인 내용으로 발전했다. 또한 초기에 예상되었던 규약위원회와 가입국정부사이의 공방전도 실제로는 생산적인 대화로 대체되어 가입국정부로부터의 불만도 줄어들었다.

유엔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동서-남북 진영간의 갈등으로 인해 그 실행절차가 취약했던 -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의도적으로 취약한 절차를 두었던 - 80년대 중반이후로부터 독립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효과적인 조약기구인 현 위원회로 변모하게 된 데에는 세가지 정도의 중요한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이전까지 경제사회이사회가 인권A규약의 이행여부를 감독하는데 매우 비효율적이었다는 사실이었다. 이 점에 대한 공감대가 이사회 차원에서 넓게 확산되어 있었다. 둘째로는 80년대 중반이 이르러 유엔 인권소위(인권위원회의 중요한 연구조사 사업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1986년의 '신국제경제질서와 인권의 증진')를 비롯한 유엔의 중요 기관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던 현상이 있다. 또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70년대말에는 발전권(사회 및 개인의 발전을 누릴 권리)에 대해서, 80년대 초에는 주거, 교육, 보건에 관한 권리를 중요한 인권문제로 다루었던 바가 있다. 때문에 인권B규약에 따른 기구(인권이사회)에 상응하는 인권A규약의 기구가 별도로 없는 상황에서 유엔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 충실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세계로는 인권A규약 기구의 설립에 계속 반대의 뜻을 표했던 동구권 국가들이 80년대 중반에 들어와 입장을 바꿨던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인권A규약위원회가 그 짝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B규약위원회 즉 인권이사회(Human Right Committee)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첫째 이유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직도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는 프로그램적 성격의 권리로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정서를 통한 개인구제절차 또는 그 외의 개입절차에 대해 주권침해로 규정하는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유는 인권이사회가 독립적인 규약기구인데 비해서 인권A규약위원회는 - 비록 독립된 전문가들의 위원회라든 성격을 지녔지만 -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에 속한 기관이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적 기관의 성격도 갖고 있다. 즉 인권A규약위원회의 권한과 절차는 경제사회이사회를 보조하는 것이므로 이사회의 회원국정부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점이 인권이사회와의 커다란 경제적 차이점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경제사회이사회가 인권A규약위원회로 하여금 독립된 규약기구처럼 운영되도록 보장해왔기 때문에 이 중의 중속성에 따른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

인권A규약에 가입한 나라는 다음과 같은 기본 의무를 지니게 된다.

- . 가입국은 조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 . 규약상의 권리의 완전한 실현은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지만, 그중 일부 권리조항은 규약가입과 동시에 바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 사회권실현에 민간단체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며 이 역할은 가입국 국내차원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 . 규약상의 권리실현과 정책입안에 사회각층의 국민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 . 규약상의 권리실현에서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집단의 생활기준을 개선하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다음은, 규약상의 권리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절한 조치 시행의 의무로서;

- . 가입국은 가입과 동시에 규약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향해 가용 가능한 모든 조치를 즉각 시작할 의무가 있다.
- . 가입국은 사법적 구제절차를 포함해 효과적인 구제절차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 . 2조 2항의 차별금지조항과 같은 조항은 가입국이 가입과 동시에 즉각 실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 . 가입국의 경제발전수준과 상관없이 최저생존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 . 권리실현을 위한 자원 이용의 적절성 여부는 가입국의 지위를 평등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했는가에 대한 판단으로 한다.

(3) 인권A규약에 따른 국가 보고제도

. 규약 가입국이 규약의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규약위원회는 그 나라 정부대표를 출석시킨 가운데 보고서를 심사한다. 그리고 심사후에 '일반 논평(General Comments)'을 통하여 그 나라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권고한다.

규약위원회는 A규약의 해석과 적용, 실시상황에 관한 사실상 최고 권위를 가진 국제기관이다. 이 기관은 아무런 강제조치 권한이 없으나 그 평가와 논평이 큰 권위를 가지므로 이에 기초해서 인권상황 변화를 유도한다.

민간단체의 반박보고서의 의의는 크다. 왜냐하면 대부분 정부보고서는 문제점을 은폐하고 장점만 부각하는 등 내용의 부실하기 때문이다. 규약위원회도 인권단체들이 정확한 자료와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보고서제출을 권하고 있다. 또한 A규약위원회는 민간단체들에게 가장 개방적인 유엔기관이기도 하다. 따라서 민간단체에서 별도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상황을 국제수준에 비춰 검증하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이며, 또 규약위원회의 평가와 논평은 인권운동을 이끌어 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프로그램적 조항으로서 국민적 열망을 표현한 것이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이러한 권리는 국민에게 직접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소송을 통하여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A규약위원회는 이 규약을 훨씬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특히 권리보장정도에 대하여는 국가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 그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조항을 가입국이 성실히 수행하는데에는 현실적인 난관뿐만 아니라 사회권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도 작용하는 듯하다. 우리는 각 나라 정부대표들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나 인권위원회에서 제기한 사회권에 대한 반대논리로부터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논쟁의 핵심을 읽을 수 있다. 즉, 첫째 선택의 정서 반대입장에서는 경제적 권리가 인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주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철학에서 제기해 왔고 또 수없이 격파된 논리이기도 하지만 종종 정부대표들이 아직도 제기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둘째로 경제적 권리의 증진은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제소절차 채택 등 적대적 방식이 아니라) 비적대적인 방식으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세계로 각국의 경제정책 입안과정은 주권영역이므로 국제기구의 개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로 경제적 권리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다. 다섯째로 사회권은 주로 집단적 권리를 다루며 집단적 권리는 개별제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가 있다. 주로 다섯가지의 커다란 반대입장을 간단히 요약하면 경제적 사회적 권리의 문제를 국가의 정책차원 또는 시혜적 복지차원의 문제로 국한시켜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 과잉국가로부터 획득하여야 하는 '권리'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이점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전개될 국민생활최저선(national minimum)확보운동, 시혜차원을 넘어서 복지제도의 정착화, 소비자주권운동 발전등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4) 민간단체들의 역할

지난 20여년간 유엔은 인권분야에서 민간단체들의 참여와 권한을 점차로 증대시켜왔으며 그 결과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민간단체의 역할은 단순히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위치까지 짐하게 되었다. 유엔현장에 근거한 기관들(보통 정치적 기관들이라 부른다)은 조약기구(즉 다자간 정부조직)들보다 민간단체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개방적이었다. 그러나 인권A규약위원회는 1988년에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보고서를 공식 접수하는 절차를 채택함으로써 가장 민간단체에 우호적인 조약기구로 자리잡게 되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일반토론시간(general discussion)에 민간단체 대표의 발언을 허용하기조차 한다. 동시에 그동안 위원회 위원들은 보고서를 제출한 정부에 질의를 할 때 민간단체들이 제공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시민 정치적 권리를 다루는 인권이사회와는 달리 민간단체측에서는 인권A규약위원회에 대한 참석은 물론 보고서제출에도 극도의 소극성을 보여왔다. 그 이유는 세계 각국의 대부분의 인권단체들중에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인권 그 자체로 다루는 인권단체가 아직 별로 없다는 데 있다. 또다른 이유는 기존에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이미 다루고 있는 단체들의 경우 스스로를 인권분야 단체로 여기지 않거나 또 인권A규약에서 규정하는 종합적인 인권개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노동권을 다루는 노동조합의 경우 이미 ILO를 통한 절차에 익숙해 있는것과 아울러 노동권이 현업 노동자만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종합적인 권리 특히 경제적 사회적 권리의 일부라는 점을 아직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요약하자면 인권A규약상의 개별권리가 사회권이라는 커다란 범주상의 공통성을 갖고 있다는 사회권에 대한 범주적 인식의 부족과 그에 따른 사회권 전달 조직의 미흡함 또는 그를 대신할 사회권 차원 연대성의 미흡함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 UN Division of HR가 1980년에 주최한 세미나 자료 :Effects of the existing unjust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on the economie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obstacle that this represents for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이 세미나는 유엔인권기구들과 유엔관련 인권단체들의 관심사를 시민 정치권 분야에서 경제·인권 분야로 옮겨가게끔 한 본격적인 계기중의 하나이다. 이 세미나는 1975년부터 유엔에서 제기되었던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 대한 관심을 집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자료>

- 한국민단단체 반박보고서 :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South Korea", 1994년 6월, 민변등 9개 단체.
- 인권A규약에 대한 정부보고서
- '94 APEC 보고르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 민간사회단체의 입장, 전국연합, 참여연대, 환경연 등 8개단체, 94.11.15
- "An agenda for the Social Summit", Human Development Report, UNDP, 1994.
- "Appraising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Regime", Philip Alston, [The United Nations and Human Rights], Clarendon Press, 1992
- "Commentary by the Rapporteur on the Consideration of States Parties' Repor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David Harris, [Human Rights Quarterly Vol. 9 No. 2], 1987.
- "Economic and Social Rights", Philip Alston, [Human Rights: An Agenda for the Next Century],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1994.
- "Foreign Policy and Human Rights", R. J. Vincent, 1986, Cambridge Univ. Press, Chapter 13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J.D. Armstrong.
- "No Right to Complain About Being Poor: The Need for an Optional Protocol to the Economic Rights Covenant", Philip Alston, [The Future of Human Rights Protection in a Changing World], Norwegian University Press, 1991.
- "Out of the Abyss: The Challenges Confronting the New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hilip Alston, [Human Rights Quarterly Vol. 9 No. 2], 1987.
- Report on the Eighth and Ninth Sessions,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1993/19.
-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hilip Alston, [The United Nations and Human Rights], Clarendon Press, 1992
- "The Limburg Principl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N.4/1987/17, Annex, [Human Rights Quarterly Vol. 9 No. 2], 1987.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민간단체보고서
작성 취지와 경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와 관련된 한국의 10개 인권단체들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른 정부보고서에 대한 민간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4월 21일 유엔인권센터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발송하였다. 이미 작년 6월 27일에 제출된 민간단체의 약식보고서는 위원회의 사전심의실무분과(Pre-sessional Working group) 위원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공식 심의문서로 채택된 바 있다. 본 보고서는 5월에 열리는 위원회의 12차 회기를 앞두고 약식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작성되었다.

1) 민간보고서의 작성취지

- 첫째, 정부보고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족한 정보를 보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인권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 둘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가 정부보고서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위원회와 한국정부간의 생산적인 대화에 도움이 되고, 그를 통해 가입국의 보고의무가 원래의 뜻한 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 셋째, 국내에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홍보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인권보장을 위한 인식과 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2) 경과보고

국내 인권단체들이 한국정부가 93년 10월에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정보를 외국의 인권단체를 통하여 받은것은 94년 5월 20일 경이었다. 한국정부는 최초보고서의 제출사실을 전혀 공개한 바 없었고, 따라서 그해 6월 27일부터 열리게 될 사전실무분과회의까지 한달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단체보고서 작성사업은 긴박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권영길(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및 업종회의공동대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조용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등 3인이 민간보고서를 공동작성할 것을 여러단체에 긴급제안했고, 이에 찬성한 9개단체가 3차례의 모임을 통해 '조약에 대한 이해공유, 정부보고서의 검토, 민간보고서의 방향결정'을 한 후 바로 해당분야 집필에 들어갔다.

1달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약식보고서는 제네바로 출국한 실무대표자에 의해 유엔인권센터 사무국에 직접 제출되어 관계자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국정부 보고서의 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사전실무분과 위원장 필립 올스턴(Philip Alston)교수는 "이 보고서를 실무분과가 받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다. 민간단체가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우리로서는 이상적인 상황일 것이다. ...광범위한 한국 민간단체들이 제출한 이 보고서는 매우 가치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 고 말했다.

실무분과는 1) 정부보고서, 2) 사무국에서 수집한 자료, 3) 민간단체의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심의대상 정부에게 보내는 질문목록을 확정했다. 한국의 경우 모두 28항목의 질문내용이 확정되어 정부와 민간단체에 공개되었다.

위원회는 본래 94년 11차회기(11월 21일-12월 9일)에서 한국정부의 보고서를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한국정부가 이의 연기를 요청하여 95년 5월의 12차 회기에서 다루기로 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위 28항의 사전질문을 기초로 하여 한국 정부대표를 출석시킨 가운데 정부보고서 내용을 심사하게 된다.

이에 약식보고서를 준비했던 민간단체들은 부족한 내용을 보충한 정식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을 세우고 모임을 계속했다. 94년 12월에 후속모임이 제안되었고, 95년 1월 새해초부터 시작된 준비작업은 크게 1월의 내용분담, 보고서 집필의의 및 방법공유, 2월의 초고집필 및 취합, 3월의 초고감수 및 영역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 기간중 취합된 초고를 기초로 하여 '요약본'을 만들어 3월 29일에 유엔에 발송하였다. 현재는 제네바에서 열릴 위원회의 12차 회기에 참가할 민간단체대표단이 발언시 참조할 슬라이드 필름을 제작중에 있다.

참고할 내용

1.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조약전문은 별첨참조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은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및 선택의정서'와 함께 1966년 12월 16일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76년에 발효되었다. 이 두 조약은 세계인권선언과 더불어 국제인권장전이라 불리우고 있고, 이들은 인류가 도달한 인권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현대세계에서 문명국이 지켜야 할 인권의 기준이 되고 있다.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 자유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하여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조약'은 '사회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경제사회이사회가 인권이사회를 모델로 해서 1985년에 설립한 기구이다. 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회기내 활동그룹이[sessional Working Group]이 심사를 했으나, 그 활동의 비효율성이 계속 지적됨에 따라 조약의 충분한 이행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가 설립된 것이다. 위원회는 설립이후 1987년과 88년의 1, 2차 연례회기를 통해 124개국의 1차보고서와 44개국의 2차 보고서를 심사한 바 있으며, 조약의 규정들을 명확화하는 연구작업과 정부보고서의 심사, 그를 통한 권고를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활동을 위해 관련 유엔 전문기관(ILO, WHO, UNESCO, FAO)과 민간단체의 협력을 받는다. 위원회의 위원들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전문가이며 본 조약을 비준한 당사국 정부에 의해 지명, 선출된다. 이 전문가들은 당사국 정부에 의해 선출되지만 정부의 대표는 아니며 정부에서 독립하여 개인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선출되는데 기구는 조약이 정한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임원을 선출하고 규칙을 만들 수 있다.

3. 당사국의 보고의무

당사국은 본 조약을 비준한 때로부터 일정한 시기에 자기 나라에서 그 조약이 정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이루어진 진보, 그리고 조약의 이행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장애를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정부대표를 출석시킨 가운데 보고서를 심사하고 필요한 권고를 하거나 논평을 한다. 이와같은 일련의 보고절차는 당사국에 대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당사국이 조약의 최종 해석기관의 의견을 따를 의무가 있고 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법적, 도덕적, 정치적으로 큰 비중을 갖는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4. 민간단체보고서 [NGO Report]

5년에 1번 있는 위원회의 심사는 한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상황을 국제법의 기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찾아보는 뜻깊은 기회이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문제점을 은폐하고 장점을 부각시키게 마련인 정부보고서를 심사함에 있어 위원회가 한국의 실정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까닭에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위원회에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민간단체는 조약의 실제적인 이행 또는 미비한 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이점을 감안하여 정부보고서를 작성할 때 민간단체들을 참여시키도록 권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민간단체들이 반박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인권 자료		
등록일	분류기호	
	C 1-2	3

< 보도 자료 >

유엔 국제사회권규약 민간보고서의 중요내용 및 제출취지
“코펜하겐 정상회의 이후 첫 본격 NGO국제활동”

- NGO보고서 작성단체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 인권센터, 한국노동정책연구소, 한국도시문제연구소, 등 8개 단체.
 - (동의서명 단체 : 노동과 건강 연구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회의 및 기구명칭 :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 (약칭 국제사회권위원회)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역사 : 1986년 유엔 총회 결의안에 따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독립적인 전문가 심의기구로 설치됨. (인권이사회를 모델로)
 - 구성 : 세계 각 지역별로 선출된 18명의 전문가 (현 의장: 필립 올스텐)
 - 기능과 권한
 - (1) 사회권 증진 방향 및 방안 모색
 - (2) 국가보고서 심의 및 권고안 제출, 경제사회이사회에 상정
 - (3) 사회권규약의 규범, 척도, 해석상의 문제에 대한 심의 및 일반논평 발표 (일반 논평General Comment는 국제인권법상 중요한 지침이 됨)
 - (4) 정부, 유엔 전문기관, 민간단체, 위원회 간의 생산적 대화가 진행되도록 촉진
 - (5) 실무회의(Working Group)을 두고 심의 대상 정부에 대한 결의안을 확정도 록 함.
 - (6) 사회권 및 사회복지 관련 국제 전문기관들과 협의 및 공조
- 국제사회권규약에 가입하고 이를 비준한 한국정부는 매 5년마다 사회권 관련 정기 국가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절차에 따라 민간단체들도 별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에 대한 첫 정식 심의가 오는 5월 1일부터 19일까지 동 규약위원회의 회기(제네바)에 있습니다. 심의결과는 정부에 대한 공식 권고안으로 발표됩니다.
 - (한국정부 : 1990년 가입, 비준, 1차 보고서 제출(1993))
 - (북한정부 : 1981년 가입, 비준, 1차 보고서 제출(84-88년), 2차 보고서(시한 넘김))
- 근거 조약 :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76년에 발효)
- 이번 민간보고서 및 회의 참석은 '사회복지 및 사회권'과 관련한 첫번째의 국제적 민간 대응입니다. 또한 이번 활동은, 리우환경회의, 빈 세계인권대회,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 등에서 나타난 NGO차원의 국제민간외교활동의 활성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여 국내

의 체계적인 민간외교활동이 본격화된다는 의의를 아울러 지니고 있습니다.

○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는 사회개발정상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한 사회복지 관련 유엔 전문기관의 하나로, 이번 한국 민간단체들의 회의 참석 및 보고서 제출은 사회개발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른 후속활동의 의의를 아울러 지니고 있습니다.

○ 보고서의 중요내용 : 별첨 요약보고서(한글) 참조

○ 정부보고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 급속한 경제성장의 성과들이 강조된 반면 그와 상반된 여러가지 한국민의 삶의 질이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다.

- 실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보장의 상황을 보여주는 사실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조약의 의무이행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난관에 대한 설명이 없다.

- 정부보고서에 제시된 통계는 국제수준과 비교가 불가능한 자료가 대부분이며, 구체적인 인권증진 계획 보다는 막연한 개선약속이 대부분이다.

- 그러므로, 정부보고서로는 한국에서 권리보장이 가장 시급한 집단, 가장 문제되는 사안,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하여 판단하기 힘들다.

- 조약에 따른 보고의 의무에는 국제사회의 이해를 돕는 충분한 정보제공이 있는데 정부보고서가 담고 있는 정보의 양은 매우 적다.

- 많은 지면이 한국의 법조문을 나열하는데 쓰여지고 있는데 반해, 실제 실행과정, 국민의 사법 인식 및 법 문화, 서민들이 겪는 사법적 구제상의 난관 등에 대한 언급이 전무하다.

- 특히 노동권과 관련된 몇가지 법률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여러차례 개정을 권고한 바 있는데, 노동조합 가입권에 대한 제한규정, 노동조합의 활동제한 규정, 노동쟁의 금지에 관한 조항 등에 대해서 기존법의 타당성만을 설명하고 있다.

- 정부가 그동안 규약비준과 효력발생에 따른 국민홍보를 하지 않은 점, 보고서 작성과정을 시민사회에 공개하지 않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추진한 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유엔 국제사회권위원회 참석활동 계획 및 취지

○ 사회권규약위원회 95년도 정기회기 참석 예정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 김선수 변호사, 조용환 변호사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참여연대) 인권센터 : 문진영 교수(성공회대, 사회복지학),
장소영 국제부장.

- 체류기간 : 김선수, 조용환, 문진영(4.28-5.6), 장소영 (4.28-5.20)

○ 활동 내용

- (1) 사회권종합보고서 제출 및 심의위원 회람.
- (2) 사회권중진 및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협의 : General Discussion 참가
- (3) 사회권위원회 회의중 한국 사회권 상황 구두발표 및 자료화면 상영
- 약 한시간에 걸쳐 발표 및 상영 : 5월 1일
- 발표자 : 조용환 변호사, 장소영 국제부장.
- (4) 한국 심의위원들과의 대화 및 개별 설명 (한국 심의 : 5월 2-3일)
- (5) 한국정부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1차 및 2차 질문내용에 관한 협의 및 정보 자료 제공
- (6) 국제사회권관련 NGO대표들과의 회동 및 협력
- (7) 외국 사회권관련 자료 수집
- (8) 회의 진행과정 및 결정사항(권고안 등) 국내 홍보

○ 예상 효과

- (1) 한국 사회권상황에 대한 국민 양자의 인식 증대 및 심화
- (2) 권고안에 따른 국내 사회복지 및 사회권 상황 개선 촉진
- (3) 사회권에 대한 홍보효과에 따른 사회적 인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
- (4) 사회권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NGO와의 교류 및 협력
- (5) 국제사회권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 것에 따른 위원회 위상 강화에 기여

○ 유엔 사회권위원회 심의절차

정부 및 민간보고서 제출 - 실무회의(Working Group) 사전검토 및 대정부 질의안 확정(민간단체 대표 참석, 구두발표 및 설명) - 정부 및 민간 보완 보고서 제출(선택) - 정기 회기 (일반심의general discussion/ 해당국 사회권상황 심의/ 민간단체 발표, 질의/ 정부 답변/ 보충질의/ 보충답변/ 심의/ 권고안 확정/ 논평 발표) --> 결과에 대한 국내 국민 협의 및 국내 반영, 개혁사항 차기 보고서에 반영.

○ 민간단체 사회권종합 보고서

- 분량 : 한글 110쪽, 영문 104쪽.

- 내용 : 노동권, 사회보장권, 주거권, 장애우 인권, 가족생활보장권, 교육권, 문화권

등 복지권 상황에 대한 서술, 정부보고서에 대한 평가, 대정부 제안 및 결의안, 등.

◦ 정부 및 민간단체의 보고서 제출활동의 의의
(현 사회권위원회 의장 올스틴 교수의 견해)

(1) 정부 담당기관으로서 하여금 규약에 따른 국내법적 조성과 국내 의무사항의 준수 여부를 면밀히 또 정기적으로 고찰하게 함으로써 사회권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높인다.

(2) 경제 사회 분야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원칙에 따른 정책 결정'을 촉진한다.

(3) 정부의 경제 사회 분야 정책이 사회적 인권의 존중차원에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객관적 검토기준을 제공한다.

(4) 관련 국제기구가 해당 국가의 경제 사회 상황을 판별하는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한다.

(5) 다양한 국가의 정부가 사회권 증진상에서 처하는 공통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한다. (예: 국제 무역불평등)

(6) 국제조약에 권위를 부여함과 아울러 국제조약감독기구의 역할에 신뢰를 부여한다.

◦ 4월 2일 유엔에 접수된, 한국 민간단체의 15쪽 요약보고서는 현재 유엔 공식언어 5개국어로 번역되어 유엔 공식문서로 등록되어 회람중입니다.

◦ 한국 정부는 1993년 12월에 첫 정부보고서(43쪽)를 본 규약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번 심의는 규약비준에 따른 첫 심의라는 점에서, 또 민간단체의 체계적인 보고서가 함께 제출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사회권 및 사회보장의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4) 회기 전 실무그룹에서 확정된 1차 질의사항(28항목)

인권A규약의 국내법상 지위(1항), 국내법상 인권A규약상 인권피해자의 구제절차(1), 인권A규약이 한글로 번역되어 국민에게 책자로 배포되었는지 여부(2), 공무원 판사 일반인에게 홍보교육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였는지 여부(3), 인종과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 방지 여부(4), 여성임금의 불평등에 관한 질의(7), 근로감독권의 활동과 수(8), ILO조약 중 결사의 자유·강제노동·고용평등에 관한 조약을 비준할 것인지 여부(9), 교사 및 공공부문 종사자의 노조결성 및 가입의 자유 보장 및 관련법 개정 여부(10), 1993년 3천 3백여 명의 해고자(해직교사 포함)들 현상황에 관한 질의(11), 한국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한 "복수노조 금지조항의 개정을 적극 고려" 약속의 이행 여부(12), 국가보안법상 북조선인민공화국을 '이롭게' 한다는 이유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와 관련된 결사 및 의사 표현의 자유가 어떤 방식으로 제약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13), 국가보안법이 어떤 방식으로 문화적 표현의 제약을 위해 적용되었는가에 대한 질의(28), 장애자의 권익보호 조치(15), 장애아동의 교육현황(26), 외국인노동자의 차별대우 및 입법에 관한 질의(16), 가정 내 보호조치 및 "전통적 가부장제(정부보고서 176항)"가 여성의 권리실현에 미치는 부정적 요소에 관한 질의(17), 심각한 주택부족 현상 및 주거권 실현상의 불평등 상황에 관한 질의(18), "최저주거기준치" 부재의 문제(20), 한국헌법상 보장된 "건강하고 유쾌한 환경을 가질 권리"의 실효성 여부(22), 소외계층 건강관리의 질을 높이는 문제(23), 주요 산업지역에서의 환경파괴가 끼친 경제적 손실 규모(24).

인수		
분류기		
	C1 -2	5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첫 권고안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과 대처 활동 계획

1) 사회권 위원회의 제안과 권고안 중 17. 한국 정부가 노조결성과 파업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도록 하며, 특히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결성과 파업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권고한 것은 40만 교직원과 1만5천 조합원을 대표하여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세계화"를 부르짖는 현 정부가 최고의 권위를 지닌 유엔의 권고를 무시하고 "반 세계화"를 향해 줄달음 질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2) 노동조합법,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육법 시행령등 관련 법규를, 95년 정기국회에서 유엔 사회권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권고한 대로 국제 기준에 맞추어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관리가 세계를 기만하는 발언을 아무런 근거없이 자행하는 데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필요하다면 전교조 합법화에 관한 공정한 여론 조사, 교사투표를 실시하기 바란다.

3) 향후 대처 활동 계획

-대대적인 입법 청원 활동을 전개한다 -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추진한다

-국 내외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 홍보활동을 전개한다.(선전물 제작 배포, 캠페인, 집회)

-조직내 전 역량을 동원하여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의 사회권 규약에 관한 대교사, 대국민 교육을 실시한다.

-교사 학부모 등 교육주체를 필두로 전국민 서명 운동을 적극 검토한다.

-기존의 한국 정부에 대한 ILO 권고안을 준수하도록 세계 각국의 교원 노조, 국제 교원 노조 총연맹 (EI), 국제 자유 노련 (ICFTU)과 연대하여 대처한다.

1, 전교조 인정 촉구 서한을 국제적으로 조직한다.

2, 대 ILO 활동을 강화한다

3, 기본인권에 관한 ILO 협약을 비준하도록 국제적 압력을 증대시킨다.

전교조결성 이후 각종 국제 기구 전교조 지지 일지

국제 노동 기구 (ILO) 관련하여

- 91년 10월 국제 노동 기구(ILO)관계자 전교조 방문(한국의 노동정책과 전교조관련 자료 수집)
- 91년 12월 한국 정부 국제 노동 기구(ILO) 공식 가입
- 91년 12월 ILO 공동 대책 위원회 구성(업종 회의, 전노협, 전교조)
- 92년 2월 전교조 ILO 집행 이사회 산하 상설 위원회 '결사 자유 위원회'에 한국 정부 제소
(전교조 불인정 및 해직 교사 복직에 관한 건 - Case 1629호로 채택)
- 92년 3월 세계 교직 단체 총연맹(WCOTP), 국제 자유 교원 노조 연맹(IFFTU), 국제 언론 노련(IJF), 국제 건설 노련(IFBWW) '결사의 자유(ILO조약 86호, 87호)' 위반 혐의로 ILO에 한국 정부 제소
- 93년 3월 ILO 255차 집행 이사회 권고 결의안 채택
(한국 정부는 공무원 및 교원: 단결권, 단체 행동권 보장할 것을 촉구)
- 93년 11월 ILO 256차 집행 이사회 권고 결의안 채택
(전교조 인정 및 해직 교사 조건 없는 복직 촉구 철회 요구.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 권고)
- 94년 6월 ILO 260차 집행 이사회 권고 결의안 채택
(해직 교사 복직시 전교조탈퇴를 조건으로 하는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시정 촉구와 전교조를 인정할 것을 요구)
- 94년 9월 ILO 집행 이사회 결의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이행 여부 후속 보고서 (EI, 전교조) ILO 결사 자유 위원회에 제출
- 94년 10월 전노대 (업종 회의,전노협, 대기업 그룹, 전교조) 복직시 탈퇴 각서 요구와 미복직 교사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 정부 추가 제소
- 95년 3월 ILO '결사 자유 위원회' 전교조 불인정 및 노동운동 탄압, 복직 거부 교사에 관한 권고안 채택, 집행 이사회에 제출(6월 집행 이사회 심의 예정)

국제 교원 노조 총연맹 및 각종 국제 기구 관련하여

- 92년 3월 세계 교직원단체 총연맹 (WCOTP), 국제 자유 교원 노조 연맹 (IFFTU) 전교조 인정 요구
- 92년 6월 국제 자유 교원 노조 연맹 (IFFTU) 교육부에 전교조 탄압 중지 요구 및 교육부 장관에 항의서 발송
- 92년 6월 세계 교원 단체 총연합 (EI - 93년 1월 공식 출범) ILO총회시 한국 정부의 노동 탄압 특히 교사 해직 및 전교조 활동 탄압에 관한 내용으로 연설
- 92년 7월 프랑스 전국 교육 연맹 (FEN) '전교조 가입을 이유로 교사를 해직시킨 것, 교사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등에 관한 항의 서한 노태우 대통령에게 발송
- 92년 8월 호주 교원 노조 노동부 장관에게 전교조 탄압 중지 촉구
- 93년 1월 국제 자유 교원 노조 연맹 (IFFTU) 제16차 총회시 독일과 네델란드 교원 노조가 공동으로 제출한 '전교조 인정과 해직 교사 복직에 관한 긴급 결의안' 채택
- 93년 8월 국제 공공 부문 노련 (PSI) 제25차 총회시 전교조 인정 및 교사들의 단결권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서 채택
- 93년 10월 국제 건설 목공 노련 (IFBWW) 제19차 총회 및 국제 건설 목공 노련 100주년 기념식 당시 전교조 인정 및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촉구
- 93년 11월 국제 건설 목공 노련 (IFBWW), 국제 화학 에너지 일반 노련 (ICEF), 국제 사무 전문 기술 노련 (FIET), 국제 언론 노련 (IFJ), 국제 식료품 및 일반 노련 (IUF), 세계 교원 노조 총연맹 (EI), 국제 공공 부문 노련 (PSI), 국제 금속 노련 (IMF) 전교조 관련 해직 교사 전원 원상회복과 전교조 인정 등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안 채택,
- 94년 9월 캐나다 CANADA-ASIA WORKING GROUP 한국 사회 현황 조사차 전교조 방문 - 95년 5월 한국 보고서 유엔 사회권 위원회에 제출

기타 엠네스티 등 국제 인권 단체들 전교조 탄압 중지, 해직 교사 복직 촉구 등 서한 전달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의 입장 및 대처활동 계획

1995. 5. 23

1. 권고문의 특징

- (1) 강경한 표현의 권고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
- (2) 점진적인 개선의 노력을 권고하는 관례에서 벗어나 즉각적인 법개정 요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 *immediately*
- (3) 특히 항목 9 (D. 가장 우려되는 분야 중)에서 4월 18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벌어진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경찰폭력과 직접 연관된 내용을 별도로 포함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는 점.
- (4) 노동조합결성권, 파업권, 경찰폭력, 여성평등, 주거권, 영세민층 사회복지 등 우리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우려되는 바와 마찬가지로 권고가 발표되었다는 점.
- (5)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의 신속한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 그러나 사회권위원회가 정부의 재정부담이 거의 없는 사회보장제도의 형식적인 도입을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첫 걸음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쉬움.
- (6) 정부보고서와 민간단체보고서의 상당량 정보에 입각한 구체적인 권고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5가지 핵심 권고사항

- 사회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우리 민간대표단은 한국정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5가지 최종권고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지지한다.

- 5가지 권고사항

- (1) 정부는 국제기구 등에 의한 권고와 해석을 준수해야 한다.
- (2) 정부는 과거 경제개발정책의 결과로서 경제 사회 문화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

와 규약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인정하여야 한다.

(3)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해결을 위해 평화적인 해결책이 추구되어야 하고, 사회적 권리의 행사에 물리적인 억압이 동원되어서는 안된다.

(4) 한국에서의 사회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일부 노동법과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

(5) 규약에 보장된 사회적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이 설정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3. 국내법적 효력화의 문제에 대해서

- 우리는 이번 사회권위원회 회기중에 정부대표가 "국제규약에 위반되는 국내법은 있을 수 없다"고 발표한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이 발언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사항은 8개 민간단체의 공동 대정부 질의서에 포함될 것이다.

- 현행 국내법중에 권고안의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피해자와 해당 시민사회단체들은 법률적 소송활동을 통하여 국내법적 효력여부를 사법부에 묻고, 그 결과에 따라 대처해 나갈 것이다.

또한 사법부의 판결에 나타나는 국내법적 효력화의 추이를 감시하고 종합하여 매년 5월과 11월에 개최되는 사회권위원회 정기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4. 「인권심의 공동기구」의 구성을 제안한다.

- 이번 권고와 국제 시민·정치적 권리규약(일명 인권B규약)의 1992년 권고를 계기로 해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인권 공동심의기구」 구성해야 한다.

- 「인권 공동심의기구」는 정부 관련부서 책임자, 인권법 전문가, (전직 혹은 현직) 판사,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기능으로서 국제인권규범에 맞추어 이번에 문제가 된 파업권, 노조결성권, 여성평등권 등과 같이 국내법과 불일치하는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진단을 정기적으로 내리고 그 일치를 위한 대책을 제안하는 기능을 하는 기구이다.

(「인권심의기구」는 유엔인권위원회등에서 권고하고 각 국에서 설치하고 있는 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e) 구성의 첫 단계로서 국내의 규약과 헌법에 기초하여 법적 규범에 근거한 판단과 권고를 내림으로써 그 사회의 인권규범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구이다.)

5. 사회복지의 개혁을 위한 활동

(1) 인권의 개념이 전통적인 시민·정치적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되는 국제 조류에 발맞추어, 사회적 권리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하여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2) 사회권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의 확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하여 매년 5월과 11월에 개최되는 사회권위원회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3) 국내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국제 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과 비교하여 국제 사회에서 공인된 사회복지의 최저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대안을 마련한다.

6. 민간단체 공동 대정부 질의서

- 오늘 참석한 단체들은 발표한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대정부 질의서를 발송할 것이다.

- 질의내용은 :

- (1) 회의시 정부대표단의 일부 문제 발언에 대한 책임성 및 성실성 여부
- (2) 권고사항 이행 계획, 일정, 의지
- (3) 국제규약과 국내법과의 불일치에 대한 법개정 계획
- (4) 정부-민간 공동인권기구 구성에 대한 의견 등 이다.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C 1-2	5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첫 권고안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입장

1. 권고안 21항- '인권교육에 대한 더 큰 고려'

1. 기초내용

"조약이 한글로 번역되어 배포되었는가, 공무원, 판사, 사회활동가, 일반인에 대해 지금까지 실시된 교육이나 조약의 내용을 설명하는 교육적 홍보적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사전실무분과에서 확정된 28항의 질문내용중 3번째 항>

"인권에 대해 사람들이 점점 많이 알아가고 있다. 인권문제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토론이 되었다. 그리하여 차별받거나 불법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하면 10명 모두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알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10명에게 이 조약을 아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몇명이나 안다고 답변할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본심사에서 조약내용의 인지도에 대한 질문에 대한 허승 제네바대사의 답변>

"위원회는 학교체계의 모든 수준에서 인권교육의 준비를 위한 더 큰 고려가 있을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의 권고안 중 21항>

2. 우리의 평가

'인권'을 가르치는 것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 특히 '문민'을 자처하는 국가의 의무이다. 그럼에도 인권상황의 근본적 개선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해야 할 이 인권교육이 '문민' 정부의 정책 일정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무데도 없다.

유엔가입국으로서 내지는 인권에 관한 여러 다자간 조약의 가입국으로서 당연히 지게되는 의무인 인권에 관한 갖가지 유엔문서, 조약들을 알기쉽게 번역, 해설함으로써 국민에게 홍보하는 일조차 없다. 초, 중, 고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이며, 공무원이나 경찰, 교사, 법조인에 대한 체계적인 인권교육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 한국민 중에서 본 조약의 이름을 들어본 국민은 거의 없으며, 국민의 인권보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관련 부처의 공무원 들조차도 이에 대한 지식이 없다. 이런 정부의 태도 때문에 한국내 언론은 국제인권기준과 관련된 보도를 거의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인권의 '실행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것은 홍보와 교육이며 정부는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3. 우리의 요구

그러나, 조약에 대한 홍보는 가장 초보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첫째,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유엔과 유엔의 전문기구인 유네스코에서는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지 오래이며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이를 소개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점에서 볼 때 다른 상황을 따져보기 전에 인권의 보장에서 뒤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권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당연히 누릴 '권리'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둘째, 공무원과 경찰, 법조인에 대한 인권교육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최근에서야 경찰들에게 소위 미란다 원칙이란걸 교육하고 있는 것은 정말 초보에 불과하며 함량미달이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의식,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의식, 수사기법과 관련한 의식,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식, 참고인등의 인권에 대한 의식등이 체계적으로 형성되도록 교육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체계적인 인권교육의 상과 방도를 연구, 개발해야 하며, 인권교육을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을 보장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2. 권고안 20항- '철거에 대한 대책'

1. 기초내용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좀더 나은 주택의 권리를 보장할 명확한 대책을 세울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새로운 숙소를 마련해 주지 않는 철거에 대해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주택권에 대한 보충연구를 하기 바란다. <위원회 권고안 20항>

2. 우리의 평가

다른 중요한 사항도 많지만 이 권고안을 특별히 택한 이유가 있다.

두개의 얼굴인가? 사회권 회의가 제네바에서 열리고, 정부 대표가 "문민정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어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고 공언하는 시기에 우리나라의 수도서울에서는 '인권' 운운하기에도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조약과 관련된 정부의 의무 행위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철거가 진행되는 곳은 성동구 행당동·금호동·하왕십리, 관악구 봉천본동·봉천6동·봉천9동, 강동구 암사동, 동대문구 전농3동·답십리동·청량리1동, 성동구 돈암동, 서대문구 홍은1동, 양천구 신정동등으로 서울시내 전역에 걸쳐있다. 지난 3월24일 금호1-6지구에서 공고농성을 벌이던 박균백씨가 진압에 맞서 은뎀에 신나를 붓고 분신한 채 15미터 높이에서 뛰어 내린 사건은 목숨을 건 소외계층의 절박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철거용역회사는 1개 재개발지역당 15억~30억원을 받고 철거를 대행해 주는데, 일명 '공포의 외인부대'로 불리는 철거용역회사 철거반원의 폭력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철거민에게 폭행을 저지르지만 경찰은 수수방관만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25일 오전 6시30분경 봉천6동 재개발지구에서는 철거용역회사 철거반원들에 의해 40대 아주머니 자궁에 연탄재를 집어넣는 만행을 저질렀다.

3. 우리의 제안

첫째, 본 보고서 활동에 참여한 민간단체에 제안한다.

국제인권보장제도의 활용은 그 과정을 국내현안과 적절히 결합하여 대응해내지 않으면 국제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다. 국제화나 국제사회가 자동적으로 보편적 가치로 작용할 수 있는가? WSSD와 사회권조약과 관련된 사업이 국내의 인권현안 해결에 가져다줄 효과는 무엇인가? 참여의 당사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내현안에 연결시키는 노력을 할 때만이 그것의 가치가 사장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업에서 경험한 것과 얻은 성과를 참여단체간에 확실히 전달, 공유하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둘째, 정부는 '주택권'에 대해 좀더 연구하라는 국제사회의 권고에 '수치감'을 느껴야 한다. 다른 권고안에서도 사회권 위원들의 반응에는 '00는 상식밖!'이라는 식의 뉘앙스가 강하게 풍기고 있다.

정부는 말에 그치지 말고, 국제적 논의와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여 국내의 법과 정책의 틀에 얽매이기 보다는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진 인권조약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법과 정책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해 보이기 바란다.

정부는 그간 시민, 정치적권리위원회의 권고안(1992), ILO 제 255차 이사회의 권고안(1993)등 국제사회의 권고안을 계속적으로 무시하고 이에 대한 시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본 사회권관련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또한 그렇다면 그것은 국제사회의 지탄의 대상이며, 현정부가 부르짖는 세계화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처사임을 상기하기 바란다.